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주제별 해설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

2025년 8월 31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5년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Council of Europe/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25

목차

목차.....	3
일러두기	5
서문.....	6
I. 집회의 자유(제11조)	6
A. 적용 범위	7
B. 제한의 형태	11
1. 집회 불허	12
2. 집회 참여 방지 목적의 예방적 구금 및 접근 거부 조치	13
3. 집회의 해산 및 물리력 사용	14
4. 시위 이후 제재	14
C. 합법성	15
D. 정당한 목적	17
E.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	18
1. 집회 불허 및 무단 집회 해산	19
a. 집회 불허	19
b. 허가 받지 않은 집회의 해산.....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시위 후 처벌	22
3. 집회 참가 방지 목적의 예방적 구금	24
F. 적극적 의무	24
1. 참가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	25
2. 절차적 의무: 조사	26
G. 차별적 근거에 따른 제한	27
II. 표현의 자유(제10조).....	28
A. 적용 범위	28
B. 제한의 형태	29

1. 인터넷 사용 차단	29
2. 언론 보도 제한	30
3. 항의시위 도중 외침·연설에 대한 제재	31
C. 합법성	31
D. 정당한 목적	32
1. 국가안보 보호 및 무질서 또는 범죄 방지	33
2.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 보호	34
3. 도덕의 보호	34
E.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34
III. 생명권(제2조).....	38
A. 실제적인 측면	38
B. 절차적 측면	40
IV.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금지(제3조)	41
A. 적용 범위	41
B. 실제적인 측면	43
C. 절차적 측면	45
V.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5조)	48
A. 자유의 박탈	49
B. 합법성	51
C. 제5조제1항 자유 박탈 정당화	51
D. 자유 박탈 시 보호조치	54
VI.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6조)	56
A. 적용 범위	56
B. 공정한 재판 보장	57
인용 판례 목록.....	60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의 각 조항에 따라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조문별 판례 해설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년 1월 18일, § 154, Series A no. 25, 및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2005, § 156, ECHR 2005-VI, 더 최근 사건인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 15 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eđa v. Poland* [GC], § 324).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결은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문

1. 본 해설서는 다수인의 집회 또는 시위의 한 형태인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 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고 협약상 관련 원칙을 요약한 것이다.
2. 재판소의 판례에서 모든 집회가 반드시 시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시위는 가장 빈번히 제한되는 집회의 형태이므로 협약 제 11 조 및/또는 제 10 조에 따라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쟁점이 된다. 재판소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 성립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판례상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집회를 심리한 바 있다(예를 들어, *Navalnyy v. Russia* [GC], 2018; *Alekseyev v. Russia*, 2010; *Shapovalov v. Ukraine*, 2012; *Virabyan v. Armenia*, 2012; *Frumkin v. Russia*, 2016, § 148; *Işıkırık v. Turkey*, 2017 참조).
3. 본 해설서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의 준비, 참여 및 경우에 따라 그 이후의 형사처벌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협약 제 10 조 및 제 11 조를 비롯하여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 등 협약상 다양한 조항에 따라 인정되는 참가자들의 권리에 관한 재판소 판례를 개관한다. 인용된 사례가 모두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법리와 판단 기준을 담았다.

I. 집회의 자유(제 11 조)

협약 제11조¹

-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면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럽인권협약 제 11 조에 대한 해설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 참조.

A. 적용 범위

4.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는 민주사회에서의 기본권이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Kudrevičius and Others v. Lithuania* [GC], 2015, § 91; *Taranenko v. Russia*, 2014, § 65).

5.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사적 회합과 공공장소에서의 회합 모두 포함하고, 정적인 형태이든 행진이든 그 방식과 관계없이 보호된다. 이 권리는 모임에 참여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최하는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Djavit An v. Turkey*, 2003, § 56; *Barraco v. France*, 2009, § 41; *Yılmaz Yıldız and Others v. Turkey*, 2014, § 41).

6. 또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는 협약 제 11 조제 2 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회의 시간·장소·방식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Sáska v. Hungary*, 2012, §§ 21–23).

7. 다만, 협약 제 11 조는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만을 보호한다. 주최자와 참가자의 의도가 폭력적인 시위는 이 조항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98 및 *Ter-Petrosyan v. Armenia*, 2019, § 53). 따라서 제 11 조에 따른 보호는 주최자와 참가자가 폭력을 의도하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모든 모임에 허용된다(*Fáber v. Hungary*, 2012, § 37; *Gün and Others v. Turkey*, 2013, § 49; *Taranenko v. Russia*, 2014, § 66). 방해 행위나 혼란을 수반한 모임일지라도 폭력적인 의도나 행동, 폭력 선동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다(*Laurijse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2024, §§ 54–59)

8. 폭력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집회 과정에서 타인이 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처벌 가능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개인이 평화적인 의도와 행동을 유지하였다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누리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Pr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155).

9.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Maidan) 항의시위에 관한 *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2021 사건 § 491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 11 조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i) 해당 집회가 평화적인 의도였는지 또는 주최자의 의도가 폭력적이었는지 여부 (ii) 청구인이 집회 참가 당시 폭력적인 의도를 드러내었는지 여부 (iii) 청구인이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여부를 고려한다고 설명하였다(또한, *Çiçek and Others v. Turkey*, 2022, § 136 참조).

10. *Shmorgunov and Others* 사건 §§ 495–505 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당국이 시위대에 대해 과도하고 때로는 가혹한 공권력을 신속하게 행사하였고(협약 제 3 조 및 제 5 조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구금 사례 포함), 이로 인해 시위가 당초의 평화로운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폭력의 격화로 이어졌거나, 최소한 이를 유발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재판소는 시위대가 24 시간 평화적인 철야집회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가한 물리력이 비례성을 상실한 경우, 그 시위가 수도 중심 광장을 점거하는 방식의 방해 시위였더라도, 제 11 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의 충돌이 더욱 격화된 시위에 참여하였더라도, 해당 청구인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동안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했다거나 경찰에 저항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이상, 그 항의시위는 제 11 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또한 *Lutsenko and Verbytsky v. Ukraine*, 2021, §§ 112-114 참조).

11. 이와 관련하여, 매우 긴장된 상황을 초래하여 심각한 공공질서 문제에 해당할 수 있었던 시위에 관한 *Dareskizb Ltd v. Armenia* 사건 §§ 52-63 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15 조를 근거로 일부 권리(특히 제 10 조 및 제 11 조)를 침해하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였다(*Ibid*, §§ 45-46). 재판소는 특히, 해당 시위는 외관상 과도한 경찰력으로 대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협약 제 15 조상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부가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2. 더 나아가, *Annenkov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 §§ 122-129 를 예로 들면, 특정 시위자들과 민간 경비원 간 싸움을 포함하여 두 차례 충돌이 있었지만, 청구인들의 행위가 폭력적 성격을 띠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해당 싸움에 가담하였거나 다른 방식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재판소는 일부 청구인들이 책임을 졌던 문제의 행위가 그들이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협약 제 11 조상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할 만한 성격이나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Ekrem Can and Others v. Turkey*, 2022 사건 §§ 82-85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법원 청사에서 벌인 항의행동이 공공질서와 법원 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청구인들에게 폭력적인 의도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3. 반면, *Razvozhayev v. Russia and Ukraine and Udaltsov v. Russia*, 2019 사건 § 284 에서, 제 1 청구인은 다수를 이끌고 경찰 차단선을 돌파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증인들도 그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뒷받침하였다. 해당 차단선 돌파 행위는 결정적인 시점에 폭력이 격화되게 하고 충돌을 유발하였으므로, 재판소는 제 1 청구인의 고의적인 행위가 협약 제 11 조가 보호하는 “평화적인 집회”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 1 청구인의 청구를 협약 조항의 물적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14. *Harutyunyan and Others v. Armenia* (dec.), 2025, §§ 30–38 사건에서, 재판소는 폭력에 대한 명시적 언급과 정부 건물을 점거하려는 의도를 담은 발언이 있었고, 주최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지자들을 무장시켰으며, 이어진 충돌의 결과로 경찰관들에게 가해진 신체적 상해에 비추어 시위 주최자와 그 지지자들이 폭력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청구를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 부적합으로 각하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해당 시위가 제 11 조에 의해 보호되는 "평화적 집회"의 개념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Harutyunyan and Others v. Armenia* (dec.), 2025, §§ 30–38; *Bogay and Others v. Ukraine*, 2025, §§ 71–75 와 비교 대조).

15. 주최자와 참가자가 “민주사회의 기초를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재판소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진입을 차단한 *Makarashvili and Others v. Georgia*, 2022 사건 §§ 91–93 및 103 에서, “평화적인 집회”는 독자적인 개념으로, 이 문제는 국내법상 합법성 여부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된 모임은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입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항의시위 방식이었으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국가 내 민주적 절차를 촉진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협약 제 11 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제 10 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간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해당 집회가 비록 방해적 형태의 시위를 수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주사회의 기초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다만, 국회의 통상적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흐름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는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국회의사당 진입로를 재개방하려던 도중 도로를 점거한 두 명의 청구인에 대해서 재판소는 자유형이라는 제재가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6. *Bodson and Others v. Belgium*, 2025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파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교통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폭력적 의도가 없는 경우 제 11 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81).

17. *Drozd v. Poland*, 2023 사건 § 63 에서, 재판소는 의회 건물 외부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던 도중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비공식 시민운동원들에게 부과된 1 년간의 의회 출입 금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소는 주로 문제 된 출입 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적 보호조치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 10 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18.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제 11 조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Hyde Park and Others v. Moldova (no. 3)*, 2009 사건 § 5–16 에서, 문제가 된 무단 시위 당시 청구인들의 단체는

등록되어 있었다. 이후 해당 단체는 국가의 압박과 위협을 이유로 등록을 자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하이드 파크(Hyde Park)가 법인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본 사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소송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19. 평화적인 집회는 그 형태와 유형이 다양하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띤 집회에도 제 11 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플래시 몹”(Obote v. Russia, 2019)
- 민간 카페에서 열린 한 단체의 모임(Emin Huseynov v. Azerbaijan, 2015)
- 두 집단 간 회합(Djavit An v. Turkey, 2003)
- 문화 모임(The Gypsy Counci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2002)
- 종교적·영적 회합(Barankevich v. Russia, 2007)
- 시위의 일환으로 열린 기자회견, 행진, 연좌 농성(Hakim Aydın v. Turkey, 2020, § 50)
- 비폭력적 법원 청사 항의시위(Ekrem Can and Others v. Turkey, 2022)

20. 다만, 재판소는 정부의 언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운동의 지도자에게 시민권 부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 그러한 거부가 청구인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 및 토론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약 제 11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Petropavlovskis v. Latvia, 2015, §§ 75–87).

21. 나아가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국내법상 시위의 분류나 규정은 협약 제 11 조의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요소들은, 재판소가 해당 시위가 제 11 조의 보호 범주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린 이후, 국가의 소극적 의무(보호되는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후속 질문 및 국가의 적극적 의무(후자는 쟁점이 된 경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평가에만 관련이 있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99).

22. 마지막으로, 재판소의 판례는 특정 사안이 협약 제 10 조 또는 제 11 조 중 어느 조항에 따라 심사되어야 하는지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² 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중 하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참가자들은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표현한다는 점이다(Pr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91). 또한, *Éva Molnár v. Hungary*, 2008 사건 § 42 에서 재판소는 공적 토론과 항의 표현의 장을 보장하는 것도 집회의 자유의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제 10 조가

2. 유럽인권협약 제 11 조에 대한 해설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 I.B 참조.

보장하는 개인 의견 표현의 보호는 협약 제 11 조에 규정된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가 목표하는 바이기도 하다.

23. 따라서 재판소는 무단 집회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에 대하여 협약 제 10 조 위반 여부를 심사하였다(*Elvira Dmitriyeva v. Russia*, 2019, § 77-90). *Butkevich v. Russia*, 2018 사건 § 122 에서는, G4 정상회의를 취재하던 도중 경찰의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자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소는 협약 제 11 조에서 확립된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 제 10 조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umbeş v. Romania* 사건 §§ 69-70 에서는 환경운동가가 주도한 자발적인 단기 시위(총 4 인 참여)가 주로 표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협약 제 11 조에 비추어 해석한 제 10 조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24. 반면, 청구인의 주된 주장이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재판소는 이 청구를 제 11 조만을 단독 기준으로 심사한다(*Kudrevičius and Others v. Lithuania*, 2015, § 8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 10 조는 제 11 조에 대한 일반법으로 간주되고, 제 11 조는 특별법으로서 집회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우선 적용된다(*Ezelin v. France*, 1991, § 35; *Schwabe and M.G. v. Germany*, 2011, § 101; *Hakim Aydın v. Turkey*, 2020, § 41).

25. 법원 청사 내 항의시위에 관한 *Ekrem Can and Others v. Turkey*, 2022 사건 § 68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단지 그들이 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게 된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로 경찰이 그들의 시위에 개입하여 법원 청사에서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제 10 조를 고려한) 제 11 조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6.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청구인들이 외설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고 그 내용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Peradze and Others v. Georgia*, 2022 사건 § 33 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은 협약 제 10 조에 비추어 고려한 제 11 조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B. 제한의 형태

27.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협약 제 11 조제 2 항에 규정된 “제한”이라는 용어는 공개 집회 이전 또는 도중의 조치뿐만 아니라 사후의 징벌적 조치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Ezelin v. France*, 1991, § 39). 아래 제시된 제한의 형태는 집단 항의시위의 맥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1. 집회 불허

28. 재판소는 사전 행정 절차(신고 요건 또는 허가 신청 요건)의 도입 자체는, 그러한 절차가 협약으로 보호하는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막는 은밀한 장애물을 구성하지 않는 한, 협약 제 11 조에 내재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Éva Molnár v. Hungary*, 2008, § 37).

29. 국가는 협약 제 11 조상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 그 절차의 방식을 정할 때 광범위한 재량이 있지만, 절차에 부과되는 형식적 요건은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야”하고, “집회의 자유를 막는 은밀한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2017, § 422). 예컨대, 서로 대립하는 두 집단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양측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은, 집회의 자유를 막는 은밀한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 한, 협약 제 11 조에 위배되지 않는다(*Csiszer and Csibi v. Romania*, 2020, § 105).

30. 다만, 공공집회의 사전 통보 시한을 기계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통보 시한 종료일과 예정된 집회일 사이의 간격이 과도하게 긴 경우,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2017, § 456).

31.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Pr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사건 §§ 121–128 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상 5 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시한이 ‘통지서 발송일’을 의미하는지, ‘접수일’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주최자들이 법을 잘못 해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주최자들이 행사 전날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의 첫날에 통지를 발송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최자들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였다.

32. *Uzunget and Others v. Turkey*, 2009 사건 § 50 에서 재판소는 행사 72 시간 전에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협약이 보호하는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막는 은밀한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3. 재판소는 또한 체약국이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Malofeyeva v. Russia*, 2013, § 136; *Disk and Kesk v. Turkey*, 2012, § 29). 다만, 이러한 제한으로도 비례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제한이 된다.

34. 예를 들어, *Berladir and Others v. Russia*, 2012 사건 §§ 47–51 에서 시 당국은 집회를 승인하되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단축하여 개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재판소는 이러한 조건이 청구인들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5. 재판소는 통지가 없거나 사전 허가 없이 개최된 집회는 위법일 수 있지만, 위법 상태라고 해서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해당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99-100 및 *Cisse v. France*, 2002, § 50).

36.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집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었다고 사전에 불허하였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37. 재판소의 판례에는 집회 허가가 마지막 순간에 철회된 사례도 있다. *Makhmudov v. Russia*, 2007 사건 §§ 55-56 및 § 71 에서는, 집회 전달 현지 당국이 “테러 행위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허가를 철회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허가 철회로 청구인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38. *Hyde Park and Others v. Moldova (nos. 5 and 6)*, 2010 사건 § 41 에서, 청구인들은 집회 허가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들 중 두 명은 허가 문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재판소는 이렇게 체포되어 청구인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2. 집회 참여 방지 목적의 예방적 구금 및 접근 거부 조치

39. 회합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Schwabe and M.G. v. Germany*, 2011 사건 § 102 에서, 시위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던 청구인들은 체포되어 G8 정상회의 기간 내내 구류되었다. 재판소는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의도하던 G8 정상회의 반대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청구인이 공항에서 체포되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의도하던 집회를 놓치게 되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Kasparov v. Russia*, 2016, § 66-67).

40. *Alici and Others v. Türkiye*, 2022 사건 § 48 에서 재판소는 시위에 가던 청구인들의 자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한 실제 동기는 행사 참여 저지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useynli and Others v. Azerbaijan*, 2016 사건 §§ 84-97 에서 재판소는 공공질서 위반과 관련된 혐의로 청구인들에게 선고된 수감된 유죄 판결 및 이후 구금이 실질적으로 야당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41. *Hakim Aydın v. Turkey*, 2020 사건 § 50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대학 내 언어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 행진, 연좌 농성 등 항의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유를 박탈한 것은 제 11 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42. 폭력 발생이 임박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당국이 공공행사 장소 출입 또는 심지어 구역 전체 출입을 차단하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Pr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97)

3. 집회의 해산 및 물리력 사용

43.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행위 등 집회 도중 당국이 취한 조치는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Oya Ataman v. Turkey*, 2006, §§ 7 및 30; *Hyde Park and Others v. Moldova*, 2009, §§ 9, 13, 16, 31, 41, 44 및 48; *Pr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97 참조).

44. 집회 해산 과정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평화적인 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Laguna Guzman v. Spain*, 2020, § 42; *Zakharov and Varzhabetyan v. Russia*, 2020, § 88).

4. 시위 이후 제재

45. 협약 제 11 조제 2 항의 “제한”이라는 용어는 집회 이후 징벌적 조치 등의 조치도 포함한다(*Ezelin v. France*, 1991, § 39). 재판소는 청구인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과 그에 대해 취해진 조치 사이의 연관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해당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 구금 및 그에 따른 행정적 처벌이 있으면 협약 제 11 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Navalnyy and Yashin v. Russia*, 2014, § 52; 또한, *Ekrem Can and Others v. Turkey*, 2022, § 86 참조).

46. *Frumkin v. Russia*, 2016 사건 § 138 에서, 재판소는 집회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일부 참가자와 국가 공무원과 충돌하였지만, 청구인에 대한 제 11 조의 보장은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조치(이 사건의 경우, 애초 집회에 허가한 시간대가 지난 후 체포)는 제 11 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또한, *Varoğlu Atik and Others v. Turkey*, 2020 참조).

47. *Kasparov and Others v. Russia*, 2013 사건 § 86 에서, 집회 개최 규정 위반이라는 행정법규 위반 혐의로 체포된 청구인들 중 네 명은 집회에 참여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일응의 주장을 성립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이들의 청구가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2021, § 487 참조).

48. 반면, 국내 절차에서 청구인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Zülküf Murat Kahraman v. Turkey*, 2019 사건 § 45 에서 재판소는 시위 참여 혐의로 인한 형사 유죄 판결로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집회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은 다룰 여지도 없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그와 달리 판단할 경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도록 청구인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자기부죄금지권도 고려하였고, 형사 유죄 판결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청구인은 사실상 악순환에 갇혀 협약의 보호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또한, 법원 청사 밖에서 의도하지 않은 모임에 관한 사건 *Kazan v. Türkiye*, 2023, § 56 참조).

49. 또한, *Nurettin Aldemir and Others v. Turkey*, 2007 사건 §§ 34-35 에서 재판소는, 비록 청구인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경찰이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물리력과 그 이후 제기된 형사소추가 청구인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내었으며, 향후 유사한 회합에 참여하는 것을 단념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C. 합법성

50. 협약 제 8 조부터 제 11 조에 등장하는 표현인 “법이 정하는” 및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은, 단순히 문제 된 조치에 국내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그치지 않고, 그 법률이 질적으로 당사자가 접근 가능해야 하고 그 효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Rotaru v. Romania* [GC], 2000, § 52; *Maestri v. Italy* [GC], 2004, § 30; *Gorzelik and Others v. Poland* [GC], 2004, §§ 64-65; *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2013, § 153). 또한, 자유의 박탈이라는 방식으로 제 11 조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 그 박탈이 제 5 조제 1 항의 합법성 요건을 위반하였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제한은 위법인 것으로 간주한다(*Hakim Aydın v. Turkey*, 2020, § 51).

51. 예를 들어, *Djavit An v. Turkey*, 2003 사건 §§ 64-68 에서, 그리스계 키프로스인과 평화적인 집회를 하기 위하여 이른바 “북키프로스튀르키예공화국(TRNC)”에 거주하던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들이 분단선인 “그린라인(green line)”을 넘어 남키프로스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필요한 허가 발급을 규율하는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집회 참석을 제한한 조치는 협약 제 11 조제 2 항의 의미에서 위법한 개입으로 판단되었다(또한, *Adali v. Turkey*, 2005 참조).

52. 마찬가지로, *Mkrtchyan v. Armenia*, 2007 사건 § 43, §§ 39-45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가두행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과 벌금형을 받은 것은, 청구인을 처벌한 근거가 된 행정법규를 비롯한 구소련법이 아르메니아에서 여전히 유효한지 명확하게 규정한 국내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측가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53.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 §§ 410-471 에서, 재판소는 공공 집회의 장소·시간·방식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당국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법 조항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하고 실효적인 법적 보호조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양질의 법률(quality of the law)”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54. *Navalnyy v. Russia* [GC], 2018 사건 §§ 114-119 에서 재판소는 러시아의 공공 모임 관련 규제 체계가 “신고 대상 모임”의 구성 요건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고, 형사적 성격의 제재를 비롯하여 즉각적인 체포와 자유의 박탈 등을 통해 해당 모임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당국에 과도하게 넓은 재량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였다.

55. 이와 유사하게, *Gafgaz Mammadov v. Azerbaijan*, 2015 사건 §§ 54-57 에서 재판소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공공 집회를 금지하거나 중단시키고, 집회 장소·경로·시간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며, 집회 장소로 구체적인 구역을 지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이 함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또한, 시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청구인들을 사전에 체포한 *Huseynli and Others v. Azerbaijan*, 2016 및 *Hakobyan and Others v. Armenia*, 2012 참조).

56. 반면, *Eckert v. France*, 2024 사건에서는 개입의 법적 근거인 도지사령(문제의 시위 금지의 범위를 시간과 장소로 명확히 한정함)과 이와 관련된 형법 조항이 충분히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며, 자의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3-54 및 57-59).

57. 다만, 재판소는 제 11 조와 관련된 맥락이라도 특히 사회적 가치관이 변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분야라면 법률 입안 시 완전무결한 명확성은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Ezelin v. France*, 1991, § 45). 재판소의 설명에 따르면, 특히 주어진 행위의 결과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예측 가능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도 달성하기 어렵다. 법적 확실성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법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모호한 용어로 규정해야 하는 법률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 해석과 적용은 실무의 문제이다(*Rekvényi*

v. Hungary [GC], 1999, § 34; *Ziliberg v. Moldova*, (dec.), 2004; *Pr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125).

58. 재판소는 또한 국내 법원이 맡고 있는 판결의 기능으로 남아 있는 해석상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당국의 몫이므로, 국내법 준수를 심사할 수 있는 재판소의 권한은 제한적이다(*Kruslin v. France*, 1990, § 29; *Kopp v. Switzerland*, 1998, § 59; *Vyerentsov v. Ukraine*, 2013, § 54).

D. 정당한 목적

59. 협약 제 11 조제 2 항에 열거되어 있는 제한으로 추구해야 할 정당한 목적³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이다.

60.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내용 기반의 제한은 기술적 성격의 제한보다 더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다. 모임 참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적인 내용 때문에 모임을 금지하는 경우, 특히 그 메시지의 주요 비판 대상이 공공모임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 바로 그 국가기관인 경우, 정당한 경우가 거의 없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86 및 *Pr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134–135).

61. *Navalnyy, v. Russia* [GC], 2018 사건에서, 야당 정치지도자인 청구인은 2년 동안 7 차례 체포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특정한 표적이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렴되는 정황 증거”가 존재하고, 야권을 통제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 속에서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제한이 제 11 조제 2 항의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협약의 전문(前文)이 언급하는 ‘법의 지배가 관장하는 실효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억제하려는 이면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제 5 조 및 제 11 조와 결합한 제 18 조⁴ 위반이었다.

62. 재판소는 연설이나 시위에서 영토 변경을 요구한 것이 자동으로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국가 안보 위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헌법과 영토의 근본적인 개편을 주장한다는 것만으로는 관련 집회를 금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Stankov and the United Macedonian Organisation Ilinden v. Bulgaria*, 2001, § 97).

3. 유럽인권협약 제 11 조에 대한 해설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 I.E (b) 참조.

4. 유럽인권협약 제 18 조에 대한 해설서 – 권리 제한의 한계 참조.

63. 재판소는 “무질서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제 11 조 관련 *Navalnyy v. Russia* [GC], 2018, § 122; 제 10 조 관련 *Perinçek v. Switzerland*, 2013, §§ 146–151). 다만, 공공장소에서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무질서 예방을 위한 조치이자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목적 하에,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Éva Molnár v. Hungary*, 2008, § 34).

64. *Ezelin v. France*, 1991 사건 § 47 에서, 청구인은 시위 도중 발생한 무질서한 사건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당국은 청구인이 변호사임에도 그러한 사건과 거리를 두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은 해당 행동을 사실상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이 “무질서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65. 다만, 재판소는 우발적이었고 어떠한 불편도 초래하지 않은 모임에 대해서는 “무질서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Navalnyy v. Russia* [GC], 2018, §§ 124–126).

E.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

66. 어떤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려면, “강력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해야 하고, 특히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당국이 제시한 사유가 “적절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Coster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4; *S. and Marper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101; *Obote v. Russia*, 2019, § 40). 다만, 이 맥락에서 “민주사회에 필요”하다는 개념은 “유용함”이나 “바람직함” 같은 표현만큼 유연하지는 않다(*Gorzelik and Others v. Poland* [GC], 2004, § 95).⁵ 또한, 청구인의 평화적인 집회 참여와 관련하여 협약의 다른 조항(예: 제 3 조, 제 5 조, 제 6 조) 침해 여부는 제 11 조 권리에 대한 제한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Navalnyy and Gunko v. Russia*, 2020, §§ 84–93; *Zakharov and Varzhabetyan v. Russia*, 2020, §§ 87–91).

67. 재판소는 국가 당국의 판단을 재판소의 견해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이 내린 결정을 제 11 조에 따라 사후 심사하는 것이 임무라고 설명하였다. 즉, 국가가 재량권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선의로 행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이 “민주사회에 필요”한지 심사할 때, 계약국에 일정한 재량권이 있지만, 그 재량은 무제한이 아니다(*Coster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5; *Ashughyan*

5. *유럽인권협약 제 11 조에 대한 해설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 I.E (c) 참조.

v. Armenia, 2008, § 89; *Barraco v. France*, 2009, § 42; *Kasparov and Others v. Russia*, 2013, § 86).

68. 비례성 원칙에 따르면, 협약 제 11 조제 2 항에 명시된 목적의 요건과 거리나 기타 공공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말·몸짓·침묵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의 요건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Kudrevičius and Others v. Lithuania* [GC], 2015, § 144).

69.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 맥락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제한 관련 이러한 비례성 심사에 대한 분석은 아래를 참조한다.

1. 집회 불허 및 무단 집회 해산

70. 재판소는 사전 하가가 없었다는 사정과 그로 인한 집회의 “위법성”이 곧바로 국가 당국에 무제한의 권한이 백지위임된 것(*carte blanche*)은 아니며, 당국은 여전히 협약 제 11 조의 비례성 요건의 구속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또한, 제 10 조의 맥락에서 이러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Bumbeș v. Romania*, 2022, §§ 94–96 참조). 따라서, 해당 집회가 애초에 왜 불허되었는지, 관련된 공익은 무엇이었는지, 그 집회가 어떠한 위협을 수반하였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시위대를 저지하거나, 특정 장소에 가두거나, 해산시키기 위하여 경찰이 사용한 방식도 제한의 비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Pr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119).

a. 집회 불허

71. 다른 공공 행사가 열릴 예정인 시각과 장소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행사를 적절하게 관리할 정도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공 집회의 장소를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비례성을 상실한 제한이라고 판단되었다(*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2017, § 422).

72. *Öllinger v. Austria*, 2006 사건 §§ 32–51 에서, 청구인은 서로 입장이 반대되는 단체와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 회합을 개최하고자 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구호나 플래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입장이 반대인 시위라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특별한 정당화가 필요한 매우 광범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73. *Sáska v. Hungary*, 2012 사건 §§ 15–23 에서는 경찰이 청구인의 시위를 특정 장소로 한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제한을 공공의 안전과 타인의 권리 및 자유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추구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예정된 또 다른 시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허가되었음을 들어 불필요한 제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74.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가 폭력을 의도했거나 폭력을 선동하려 하거나 민주사회 기반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는 등의 중대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집회 자체가 불허되거나 예정된 장소에서의 개최가 불허된 *Mustafa Hajili and Others v. Azerbaijan*, 2022 사건 §§ 35-36 에서 재판소는 집회 전면 불허와 예정 장소에서의 개최 불허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하였다.

75. 시위의 규모와 방식을 사전 승인받으라는 요건은 *Obote v. Russia*, 2019 사건 §§ 34-46 에서 심리되었다. 재판소는 러시아법상 정적인 시위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러한 맥락에서 청구인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가 무질서 방지라는 국가의 이해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76. 재판소는 또한 미등록 정당·정치단체·결사체의 상징물을 소지한 경우 시위를 불허하는 조건이 미등록 공산주의 상징물을 소지한 청구인의 사례에서 “강력한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Solari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7, §§ 25-39).

77. *Eckert v. France*, 2024 사건에서, 재판소는 소셜 미디어에서 "노란 조끼(gilet jaunes)" 운동의 시위 촉구에 따라 특정 날짜에 특정 지역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전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및 경찰과의 충돌, 시위대가 법률상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당국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금지 조치가 특정 장소 및 시간에만 엄격히 제한되었다는 점(§§ 67-72)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다.

78. 재판소는 청구인 노동조합이 조직한 시위에 대한 금지를 검토하면서 COVID-19 팬데믹이 예외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며, 부과된 간섭은 개인과 공중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절실한 사회적 필요성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Central Unitaria de Traballadores/as v. Spain*, 2024, §§ 83-84).

b. 허가 받지 않은 집회의 해산

79. 재판소는 시위대가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공권력은 평화적인 모임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Kudrevičius and Others v. Lithuania*, [GC], 2015, § 150 및 *Obote v. Russia*, 2019, § 41; *Laguna Guzman v. Spain*, 2020, § 50).

80. 재판소는 자발적인 시위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참가자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전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 비례성 상실에 해당할 수 있다(*Bukta and Others v. Hungary*, 2007, §§ 35-36).

81. *Navalnyy and Yashin v. Russia*, 2014 에서, 재판소는 허가된 집회 직후 “자발적으로 발생한” 평화적인 “행진”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하여, 시위대가 초래한 위협의 정도나 이를 중단시킬 필요성 여부를 국내 법원이 검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를 방해할 강력한 사회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찰의 강제 개입은 비례성을 상실하였고, 제 11 조제 1 항의 의미 내에서 무질서를 방지할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82. *Oya Ataman v. Turkey*, 2006 사건에서, 청구인은 허가 받지 않고 행진을 조직하였다. 교통 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공공질서를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재판소는 경찰이 최루제 분사기를 사용하는 등 강제력을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무질서를 방지할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시위대가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공권력은 평화적인 모임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83. 또한,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위를 진행한 *Nurettin Aldemir and Others v. Turkey*, 2007 사건처럼 당국의 허가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시위라고 해도 시위대가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의 강제 개입은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무질서를 방지할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판소가 재확인하였다.

84. *Ibrahim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소규모의 평화적인 시위를 시작 직후 해산시킨 사실에 주목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이 시위 해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85. 이에 반해 *Pr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수의 시위대가 단순히 “경미한” 혹은 “산발적”인 수준의 폭력을 넘어선 행동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였다. 경찰은 시위대가 주요 도로에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기 위해 개입하였다. 재판소는 특수한 진압 장비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소는 시위대와 경찰 모두 폭력에 가담한 경우라면, 폭력의 발단이 어느 쪽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Nurettin Aldemir and Others v. Turkey*, 2007, § 45).

86. *Geylani and Others v. Türkiye*, 2023 사건 §§ 122-127 에서 재판소는 한 청구인이 중상을 입은 사실을 근거로 협약 제 3 조 실체적 측면의 위반으로 이어진 물대포 사용과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 등을 언급하면서 집회의 폭력적 해산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2. 시위 후 처벌

87. 재판소는 허가 받지 않은 집회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비추어 제한의 비례성을 판단하려면 부과된 처벌의 성격과 심각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평화적인 시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특히 자유의 박탈이라는 위협을 가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비폭력적 행위에 대해 국가 당국이 부과한 제재가 자유형을 수반하는 경우 특히 엄격하게 심사한다(*Ekrem Can and Others v. Turkey*, 2022, § 92; *Chkhartishvili v. Georgia*, 2023, § 60).

88. *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2021 사건 §§ 492-493 에서 재판소는 개인이 폭력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을 판단할 때 국가 당국이 향유할 수 있는 판단의 재량이 넓어지고, 이처럼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협약 제 11 조의 보장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무장하지 않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거나 경찰을 향해 돌 등의 물체를 던졌지만, 중상을 입히지 않은 경우에 장기간의 자유형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 사건에서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물리력의 사용, 참가자 체포·구금 또는 그에 따른 유죄 판결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적용하면 당사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향후 유사한 집회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공개 정치 토론에 참여하는 것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89. *Obote v. Russia*,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행정법규 위반 책임을 인정한 국내 법원이 해당 행사로 인해 실제로 어떤 혼란이 발생하였는지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행정법규 위반 사건 절차에서 국내 사법기관은 해당 시위의 형식상 위법성에만 과도하게 비중을 두어 이해관계 간 균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90. 이와 유사하게, *Razvozhayev v. Russia and Ukraine and Udaltsov v. Russia*,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위 도중 발생한 충돌 이후 “집단 소요”를 조직한 혐의로 청구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해당 행사의 주최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선고한 것으로서 협약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emal Çetin v. Turkey*, 2020 사건 § 47 에서 재판소는 항의시위 주최자들이 문제된 행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를 선동하거나 위법 행동을 지지하지도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주최자가 그러한 행위에 명시적으로(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예: 부적절한 행동에 개입하여 중단시키지 않은 경우) 관여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항의시위 주최자는 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İmrek v. Turkey*, 2020 사건 §§ 33-38 에서, 재판소는 시위 참가자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주최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국내 법원은 이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할 의무가 있음을 특히 강조하였다.

91. 재판소는 시위 이후 처벌의 심각성도 검토하였다. *Kudrevičius and Others v. Lithuania* [GC],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집행이 1 년간 유예된 60 일의 자유형 선고를 비례성 원칙에 맞다고 보았다. 청구인에게 실제로 부과된 것은 1 년간 거주지를 7 일 넘게 벗어나고자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뿐이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약 이틀간 고속도로를 봉쇄하여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불편이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92. 이와 유사하게, 무단 집회 참가에 관한 *Rai and Evans v. The United Kingdom* (dec.),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벌금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사전 허가 신청 마감기한을 인지하고 있었고, 허가를 신청할 명확한 기회가 있었으며, 특정 보안 구역을 사용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으면 되었고, 공익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이 부과되었으며, 경찰은 청구인들이 시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재 없이 자진 해산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최종적으로 부과된 제재가 형사처벌이기는 하나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다(또한, 자유형으로 전환될 수 없는 벌금에 관한 *Csiszer and Csibi v. Romania*, 2020, §§ 118-122 참조).

93. *Eckert v. France*, 2024 사건에서, 청구인은 금지된 시위 장소에서 퇴장을 거부하여 신원 확인을 받고 1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벌금의 금전적 성격과 중간 정도의 심각성, 그리고 공공질서 교란의 상당한 위험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불균형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73-75).

94. *Berladir and Others v. Russia*, 2012 사건에서, 러시아 당국은 문제 된 공개 모임을 금지하지 않고, 대신 주최자들에게 신속한 회신으로 대체 장소를 제안하였다. 주최자들은 타당한 사유 없이 당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안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비교적 촉박한 시한을 두고 예정된 행사를 대비하여 보안을 확보하고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당국의 책무에 어려움을 더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행위가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국내 법원의 판단과 경미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았다.

95. 반면, 당국이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들을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한 뒤, 법정 상한의 80%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 *Hyde Park and Others*

v. Moldova (nos. 5 and 6),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비례성을 상실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96. *Ekrem Can and Others v. Turkey*, 2022 사건 §§ 93–94 에서 재판소는 법원 청사에서 열린 비폭력 항의시위에 대해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게 중대하고 비례성을 상실한 제재라고 보았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미결 구금 상태로 제 11 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긴 기간인 1년 8개월 넘게 수감되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97. *Russ v. Germany (2025)* §§ 51–56 에서, 국내 법원은 바이저를 착용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어 청구인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민주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적 시위 중 플라스틱 바이저를 착용한 청구인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은 "민주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재판소는 형사 제재에는 특별한 정당성이 필요하며, 법원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여 형사 유죄 판결이 협약 제 11 조(§56)의 의미에서 비례적이고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 집회 참가 방지 목적의 예방적 구금

98. *Schwabe and M.G. v. Germany*,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G8 정상회의 기간에 항의시위를 의도한 청구인들을 정상회의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6일 가까이 구금한 조치는 다른 참가자들이 시위대의 석방을 선동할 가능성을 예방하는 조치로 보기에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들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현수막을 압수하는 등 실효적이면서도 침해성이 덜한 다른 수단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협약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F. 적극적 의무

99.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체약국을 대상으로 적극적 의무도 부과한다(*Öllinger v. Austria*, 2006, § 35).⁶ 국가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도 지닌다. 제 11 조의 본질적인 목적은 개인이 협약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행사할 때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지만(*Associated Society of Locomotive Engineers and Firemen (ASLEF) v. the United Kingdom*, 2007, § 37; *Nemtsov v. Russia*, 2014, § 72), 이러한 보호 외에도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의 실효적인 향유를 보장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발생한다(*Djavit*

6. *유럽인권협약 제 11 조에 대한 해설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 I. D. 참조.

An v. Turkey, 2003, § 57; *Oya Ataman v. Turkey*, 2006, § 36; *Gün and Others v. Turkey*, 2013).

1. 참가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

100. 당국은 합법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모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적절하게 조치할 의무가 있다(*Oya Ataman v. Turkey*, 2006, § 35; *Makhmudov v. Russia*, 2007, §§ 63–65; *Gün and Others v. Turkey*, 2013). 다만, 당국은 이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Protopapa v. Turkey*, 2009, § 108). 이 분야에서 협약 제 11 조가 부과하는 의무는 결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하는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에 해당한다(*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2011, § 251; *Kudrevičius and Others v. Lithuania* [GC], 2015, § 159; *Plattform “Ärzte für das Leben” v. Austria*, 1988, § 34; *Fáber v. Hungary*, 2012, § 39).

101. 시위대의 의도가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맞불 시위 측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재판소는 당국이 합법 집회를 맞불 시위로부터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진정하고 실효적인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단순히 제한하지 않는 데에 그치는 소극적 의무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Plattform “Ärzte für das Leben” v. Austria*, 1988, § 34).

10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판소는 합법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약국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당국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한 폭력 행위를 방지하거나, 최소한 그 피해 범위를 제한하도록 적절하게 조치할 의무를 진다. 그렇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협약 제 11 조상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The United Macedonian Organisation Ilinden and Ivanov v. Bulgaria*, 2005, § 115).

103. 재판소는 또한,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는 두 집단에 대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국가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양측 시위가 모두 열릴 수 있도록 제한 수준이 가장 낮은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맞불 시위와 충돌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위를 금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당국은 그러한 판단을 내릴 때, 폭력적 충돌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혼란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제시해야 한다(*Fáber v. Hungary*, 2012, §§ 40 및 43).

104. *Plattform “Ärzte für das Leben” v. Austria*, 1988 사건에서는 맞불 시위대가 청구인 단체의 미사와 행진을 방해하였다. 재판소는, 두 건의 맞불 시위가 금지되었고, 다수의 경찰

인력이 행진 경로를 따라 배치되었으며, 청구인이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당국은 청구인 단체 보호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05. 반면, *Frumkin v. Russia*, 2016 사건에서 재판소는 평화적인 집회가 방해 받은 것은 경찰이 사전에 주최자들과 신뢰할 만한 소통 경로를 마련하도록 “간단하고 명백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협약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06. *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행진의 주최자가 가혹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찰에 명확히 경고한 것을 고려할 때 법집행 당국은 시위대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중대한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수가 제한적이었고, 말로 공격하자 경찰이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 긴장이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찰은 평화적인 행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맞불 시위자들을 제지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뒤늦게 개입하여 청구인을 일부 체포하거나 현장에서 대피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재판소는 이와 같은 경찰의 대응으로 인하여 국가 당국이 행진 도중 발생한 제 3 자의 공격으로부터 청구인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107. 이와 비슷하게, *Berkman v. Russia*,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경찰이 맞불 시위대의 동성애 혐오적 언사와 물리적 압박을 제지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점과 관련하여 협약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Promo Lex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5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시위 도중 여러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였다. 경찰은 공격이 발생하고 나서 1 시간 30 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출동하여 이미 제압된 두 명의 가해자만 연행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들을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108.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정치적, 문화적 또는 그 밖의 성격인 행사, 회합, 기타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위 현장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배치하는 등 예방적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Oya Ataman v. Turkey*, 2006).

2. 절차적 의무: 조사

109. 재판소는 개인의 행위로 인하여 협약 제 11 조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국가 당국이 해당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폭력 사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Ouranio Toxo and Others v. Greece*, 2005, § 43).

110. *Promo Lex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5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복면을 쓴 자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이 장면을 사복 차림의 경찰관이 촬영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당국은 이들이 경찰관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는 없었다. 재판소는 이후 가해자 6 명이 모두 특정되었지만, 이 중 4 명은 뚜렷한 이유 없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가해자 한 명은 금품을 받고 공격에 가담하였다고 자백하였지만, 당국은 그 배후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국가가 협약 제 11 조상의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111. 시위대와 법집행기관 사이에 폭력이 수반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 경우, 국가는 자발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폭력에 가담한 시위대뿐만 아니라 법집행당국의 행위 또한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Zakharov and Varzhabetyan v. Russia*, 2020, §§ 53-55).

G. 차별적 근거에 따른 제한

112. 협약 제 14 조⁷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협약상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시위의 맥락에도 적용될 수 있다.

113. 예를 들어, *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2007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바르샤바에서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념일에 다양한 소수자 집단(동성애자 포함)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집회를 조직하려 하였지만 허가받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에게 허가를 거부한 결정문에 차별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시장은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향한 강한 반감을 공공연히 표현한 바 있었다. 재판소는 “[시장의] 견해가 본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차별적인 방식으로 침해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제 1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14. *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동성애 혐오 폭력으로부터 시위대를 보호하지 못하고 실효적인 조사도 개시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가 협약 제 14 조와 결합한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당국은 맞불 시위대가 저지르는 혐오적 언사와 물리적 압박을 제지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Berkman v. Russia*, 2020, §§ 55-57).

7. 유럽인권협약 제 14 조에 대한 해설서 및 제 12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차별 금지 참조.

II. 표현의 자유(제 10 조)

협약 제10조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권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허가 제도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국가안보, 영토보전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위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를 위해,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의 유지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하는 형식과 조건에 따라야 하고, 제한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A. 적용 범위

115.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제 10 조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문제 된 행위 또는 행태의 성격(특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현적 성격 유무)과 그 행위 또는 행태를 한 사람의 목적이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Murat Vural v. Turkey*, 2014, § 54). 이와 관련하여, 제 10 조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보와 사상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이나 다수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견해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한다(*Bédat v. Switzerland* [GC], 2016, § 48).

116. 항의는 제 10 조의 의미에서 의견의 표현에 해당한다. *Stee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8 사건에서 항의는 청구인들이 반대하는 특정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이었지만, 재판소는 그러한 행위도 제 10 조상 의견의 표현이 된다고 보았다.

117. *Sinkova v. Ukraine*,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예술적 퍼포먼스라고 여기는 행위(기념비 위에 계란을 부침)를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성명을 작성하여 해당 영상과 함께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재판소는 이 행위가 특정 국가 정책에 대한 항의로, 협약 제 10 조의 보호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Olga Kudrina v. Russia*, 2021 사건 § 49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호텔 외벽에 포스터를 걸고 건물 아래 모인 시민과 언론인을 향해 창문 밖으로 정치 전단을 살포한 정치적 항의를 제 10 조에 따라 심리하였다. *Yezhov and Others v. Russia*, 2021 사건 § 27에서 재판소는 약 30 명으로

구성된 집단의 일원인 청구인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신원 확인 및 보안 검색대를 강제로 통과하고 해당 부처 건물 내부로 진입한 후 일부 사무실에 스스로를 가둔 채 구호를 외치고 창문 밖으로 전단을 배포한 항의 행위를 제 10 조에 따라 심리하였다.

118. 현지 야당 정치인이 정치적 항의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지도자 동상에 산타클로스 장식을 설치한 *Handzhiyski v. Bulgaria*, 2021 사건 § 45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정부 및 정부 지지 정당에 대한 자신을 “사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표현의 일환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제 10 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119. 제 10 조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 및 수신에 수단의 수단에도 적용된다. 어떠한 제한이라도 그 수단에 가해질 경우, 필연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Autronic AG v. Switzerland*, 1990, § 47; *Ahmet Yildirim v. Turkey*, 2012, § 50).

120.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행사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Times Newspapers Ltd v. the United Kingdom (nos. 1 및 2)*, 2009 사건 § 27 에서 재판소는, 인터넷이 지닌 접근성, 방대한 정보의 저장 및 전달 능력을 고려할 때, 인터넷은 대중의 뉴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적인 정보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자가 생산하는 표현 활동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장이 열린다(또한, *Delfi AS v. Estonia* [GC], 2015, § 110 참조).

121. 마지막으로, I.A.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적 집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협약 제 10 조 및 제 11 조가 보호하는 자유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B. 제한의 형태

122.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는 협약 제 10 조제 2 항의 의미에서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소는 해당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한다. 아래 제시된 제한의 형태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의 맥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1. 인터넷 사용 차단

123. 재판소는 게시된 콘텐츠의 불법성을 근거로 한 차단 조치는 사전 억제 조치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여러 사건에서 재판소는 출판에 대한 사전 억제가 제 10 조 하에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조치는 금지의 범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남용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사법심사 제도를 모두 보장하는 법제의 일부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하며, 중대한 부수적

효과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단 조치는 제 10 조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Ahmet Yildirim v. Turkey*, 2012, § 64).

124. *Kablis v. Russia*,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 당국이 장소를 승인하지 않은 공공 행사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블로그 게시물 3 건을 차단한 조치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하거나 블로그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언론 보도 제한

125. 재판소는 언론이 공공 시위에 대한 당국의 대응과 무질서 상황을 통제에 관한 정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언론인의 존재는 대형 모임에 대응하는 경찰 조치(시위대 통제·해산 방법, 공공질서 유지 수단 등)와 관련하여 당국이 시위 참가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보장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언론인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Pentikäinen v. Finland* [GC], 2015, § 89). 따라서, 언론인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공적 조치는 제 10 조와 관련된 쟁점을 야기할 수 있다(*Gsell v. Switzerland*, 2009, § 49 이하; *Najafli v. Azerbaijan*, 2012, § 68).

126. 예를 들어, 시위 현장에서 사진 기자가 체포되고 이어서 경찰 지시에 불응한 혐의로 구금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관한 *Pentikäinen v. Finland* [GC],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청구인의 기자 신분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결과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언론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27. *Butkevich v. Russia*,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우크라이나 텔레비전 방송국 소속 기자로서, 시위 중 경찰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틀간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시위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가공·보도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하려 하였다. 재판소는 정보 수집이 언론 활동에 필수적인 준비 단계이고 언론의 자유에 내재되어 보호받는 핵심 요소이므로, 당국이 청구인을 체포·구금·기소한 조치가 협약 제 10 조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28. *Najafli v. Azerbaijan*, 2012 사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는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재판소는 직무 수행 중인 언론인을 국가기관이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은 정보의 수령 및 전달의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언론

활동을 방해하려는 명시적인 의도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자신이 현직 기자임을 명확히 밝히려고 하였지만, 불필요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 10 조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3. 항의시위 도중 외침·연설에 대한 제재

129.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시위 도중 다양한 형태의 표현에 제재를 부과하면 협약 제 10 조상의 제한이 성립된다⁸.

130. 예를 들어, *Gül and Others v. Turkey*, 2010 사건 § 35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무장 불법단체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협약 제 10 조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또한, *Yılmaz and Kılıç v. Turkey*, 2008 참조).

131. 마찬가지로, *Feridun Yazar v. Turkey*, 2004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임시 전당 대회에서 당국이 간주하기에 특정 불법 무장 단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유죄 판결은 협약 제 10 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132. *Manannikov v. Russ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본 행사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소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도발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맞불 시위대가 게시한 사안에 두고, 제 11 조 판례에도 의거하면서 제 10 조에 따라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경찰이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명령한 것과 청구인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유죄 결정을 받은 것은 제 10 조에 따른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C. 합법성

133. 제 10 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이 허용되려면 모두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134.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 10 조 제 2 항의 “법으로 규정된”이라는 표현에 따르면, 문제 된 조치가 국내법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은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효과를 예측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양질의 법률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양질의 법률”이라는 개념은 예측 가능성 요건의 연장선상에서 법의 지배 원칙과의 정합성을 요구하므로 공권력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국내법상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내포한다(*Magyar Kétfarkú Kutya Párt v. Hungary* [GC], 2020, § 93).

⁸ 또한, 제 10 조 및/또는 제 11 조상 행위의 여러 유형을 분류한 예시는 [제 11 조에 대한 해설서](#)(§ I(B)(2)) 참조

135. *Kablis v. Russia*, 2019 사건 § 93 에서 재판소는 정보법 내 유관 조항에 포함된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공공 행사”라는 문구는, 공공행사의 개최 절차에서 사소하거나 무해한 위반조차도 검찰총장이 해당 행사 참여를 촉구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합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136. 반면, *Murat Vural v. Turkey*, 2014 사건 §§ 31 및 60 에서 청구인은 튀르키예 공화국을 건설한 아타튀르크(Atatürk)의 동상에 페인트를 뿌린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재판소는 「반아타튀르크 범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한 후, 해당 법률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137. 집회에 일반인의 접근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언론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론인인 청구인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회의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허가 받지 않은 시위와 소란이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를 근거로 한 다수의 보안 조치를 이유로 경찰이 접근을 제한한 *Gsell v. Switzerland*,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부과된 금지 조치에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협약 제 10 조제 2 항에 따른 합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138.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2020 사건 §§ 170-174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체포 및 미결 구금이 표면상으로는 마약 범죄 혐의와 관련되었지만 실제로는 아제르바이잔 전 대통령의 동상 위에 그래피티 작업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었으며, 이는 행위와 언어 표현이 결합된 것으로서 제 10 조의 범위에 있는 정치적 표현의 형태로 보호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면의 목적에 따른 국가 당국의 조치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고, 그러한 제한은 위법하고 현저히 자의적이며 법의 지배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D. 정당한 목적

139. 재판소는 제 10 조에 명시된 대로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제한의 필요성은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제 10 조제 2 항에서 “필요한”이라는 형용사는 “강력한 사회적 필요”의 존재를 의미한다. 필요의 존재 여부를 평가할 때 체약국은 어느 정도 판단의 재량을 누리지만, 이때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을 적용한 결정과 심지어 독립 법원의 결정까지 포괄하여 유럽 차원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 10 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제한”이 양립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판결할 권한이 있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2016, § 187; *Kablis v. Russia*, 2019, § 82).

140. 협약 제 10 조제 2 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정당한 목적으로 국가안보 보호, 영토보전, 공공의 안전 보호,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 보건의 보호,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 유지를 명시하였다. 집단 항의시위의 맥락에서 유관한 정당한 목적은 아래 논의를 참고한다.

1. 국가안보 보호 및 무질서 또는 범죄 방지

141.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토론인 경우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가 매우 좁다고 판결하였다. 표현된 견해가 폭력을 선동하지 않는 한, 즉 폭력 행위나 유혈 보복을 조장하거나, 지지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테러 범죄의 실행을 정당화하거나, 특정인을 향한 뿌리 깊은 비이성적 증오를 표현함으로써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체약국은 제 10 조제 2 항에 명시된 목적(영토 보전 및 국가안보, 무질서 또는 범죄 방지)을 이유로 일반 대중이 해당 견해에 대한 정보를 접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Dilipak v. Turkey*, 2015, § 62).

142. 다만, *Yilmaz and Kiliç v. Turkey*, 2008 사건에서는 불법 무장 단체 지지 시위 도중 외친 일부 구호가 특히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소는 당국이 국가안보 보호 및 무질서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보았다.

143. 이와 유사하게, *Gül and Others v. Turkey*, 2010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폭력적인 어조의 구호를 외쳤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누군가를 상징한 폭력, 상해 또는 해악을 조장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러한 제한은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44. *Feridun Yazar v. Turkey*, 2004 사건에서는 집회 도중 공개 연설에서 불법 무장 단체를 지지한 혐의로 청구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영토 보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45. 무질서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 10 조제 2 항의 영문이 불문보다 의미 범위가 좁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무질서 방지”를 뜻하는 영문(“the prevention of disorder”)과 불문(“*la défense de l’ordre*”)은 의미의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Perinçek v. Switzerland*, 2013, §§ 146–151).

2.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 보호

146. *Mătășaru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9 사건에서, 청구인은 부패와 검찰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검찰청 앞에 외설적인 조각상을 전시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내 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부도덕”하고, 표적이 된 고위 검사들과 정치인들에게 모욕적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문제의 제한이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147. *Mariya Alekhina and Others v. Russia*, 2018 사건에서는 러시아 페미니즘 펑크 밴드 구성원들이 성당 제단에서 노래 공연을 시도하였다. 미사를 드리는 중은 아니었지만, 성당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 공연은 약 1 분간 진행되었고, 이후 밴드는 경비원이 퇴장 조치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은 타인의 권리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도덕의 보호

148. *Bayev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 §§ 66–69 에서, 당국은 정적인 방식의 LGBT 시위를 “도덕의 보호”라는 목적에 의거하여 제한하였다. 재판소는 제 10 조제 2 항이 그러한 차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해당 조치는 미성년자들 사이에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149.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제 10 조제 2 항이 말하는 “필요한”이라는 형용사는 ‘강력한 사회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entikäinen v. Finland* [GC], 2015, § 87).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를 평가할 경우, 특히 합법적인 활동의 평화로운 진행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판단재량을 누린다(*Chorherr v. Austria*, 1993, § 31). 이러한 재량권은 재판소의 감독과 병행되며, 재판소는 어떤 제한이라도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수단이었는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Stee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8, § 101).

150. 예를 들어, 청구인 한 명은 발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사격 요원 앞에서 항의하며 걸어가고, 다른 한 명은 건설 작업에 반대하여 중장비 앞에 서는 방식으로 항의한 *Stee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8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항의 활동에 내재된 위험성과 무질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찰이 청구인들을 체포하고 법정에 넘기기 전까지 구금한 조치와 법원의 평화유지 명령(binding over)을 거부한 데 따른 수감 조치가 모두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151. 반면, *Mariya Alekhina and Others v. Russia*,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성당 제단 위에서 페미니즘 노래로 공연하려 한 행위가 폭력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았고, 신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증오, 편협함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형사 유죄 판결 및 이례적으로 엄중한 2년형을 정당화할 만한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제재는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대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협약 제 10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52. 표현의 내용에 폭력적인 어조가 포함된 경우, 재판소는 명백하고 급박한 위협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Gül and Others v. Turkey*,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합법적인 시위 도중 외친 정치적 구호가 널리 알려진 상투적 표현에 불과하여 폭력이나 봉기를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그러한 구호를 외친 것만으로 청구인을 장기간 형사 소추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53. 마찬가지로, *Yılmaz and Kılıç v. Turkey*, 2008 사건에서는, 시위 도중 폭력적 함의가 담긴 구호를 외쳤으나, 해당 구호를 청구인들이 직접 외쳤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당시 국가의 정치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무질서 방지를 위한 제한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청구인들에게 선고된 4년형은 명백히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맞불 시위자가 상대 집단 한가운데에서 도발적인 현수막을 게시한 *Manannikov v. Russia*,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혼란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현수막 철거 명령이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행정벌(유죄 판결 및 14 유로의 벌금) 역시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154. *Feridun Yazar v. Turkey*, 2004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중 세 명이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현하였을 뿐, 폭력, 무장 저항 또는 반란을 선동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 한편, 나머지 한 명의 청구인의 경우, 재판소는 연설에 사용한 표현이 분리주의 목적의 무력 사용에 대한 입장을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은 "강력한 사회적 필요"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다만, 재판소는 부과된 처벌의 성격과 심각성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55. *Elvira Dmitriyeva v. Russia*, 2019 사건에서 청구인은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 참여를 소셜 미디어에서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공공 행사의 진행 절차를 위반한 행위가 경미하고, 공공 무질서나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공공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협약 제 10 조제 2 항의 의미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56. 정치성과 예술성이 공존하는 조각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한 *Mătășaru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모욕당한 사람들의 인격권이라는 상충하는 여러 이익 사이의 균형 회복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는지 검토하였다. 이 판단 과정에서 재판소는 타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 또한 함께 고려하였다.

157. 한 정치인이 공산주의 지도자 동상에 산타클로스 장식을 설치하여 상징적 표현을 한 *Handzhiyski v. Bulgaria*, 2021 사건 §§ 45, 53 및 55 에서, 재판소는 공공 기념물은 흔히 물리적으로 독특한 것으로 한 사회의 문화 유산을 형성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 외형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행위를 억제하는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제재를 포함한 조치는, 해당 행위를 유발한 동기가 아무리 정당하여도,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의 지배가 관장하는 민주사회라면, 공공 기념물의 존속 여부에 관한 논쟁은 은밀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기념물을 모독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훼손하지는 않은 행위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민주사회에 필요한”지 따지는 일은 보다 미묘한 문제가 된다. 재판소는 이러한 경우라면 행위의 구체적인 성격, 그 동기,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정부 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소외된 집단의 고통에 주목하려는 의도에 따른 행위는, 대량학살 피해자에 대한 기억을 모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문제가 된 기념물이 지닌 사회적 상징성, 그것으로 표현하는 가치나 사상, 해당 공동체 내에서 존중하는 정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다.

158. 마지막으로, 시위 보도를 위한 언론 활동과 관련하여, 시위 도중 언론인이 체포된 *Pentikäinen, v. Finland* [GC],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시위 도중에도 그 이후에도 언론인으로서 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청구인의 체포 사유는 언론인으로서의 활동 자체가 아니라, 시위 현장을 떠나라는 경찰의 명령 불응이었다. 장비도 압수되지 않았고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적절하고 충분한 사유에 근거하여 결정하였고, 상충하는 이해관계 간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언론의 시위 보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협약 제 10 조는 위반되지 않았다.

III. 생명권(제 2 조)

협약 제2조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본 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의 보호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방지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159. 협약 제 2 조에는 생명권을 법에 의하여 보호할 일반적인 의무와 열거된 예외를 전제로 하는 고의적인 생명 박탈 금지라는 두 가지 실체적인 의무가 있다. 제 2 조는 또한 실체적 측면의 침해 주장에 대해 실효적인 조사를 수행할 절차적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⁹ 재판소는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를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의 맥락에서도 심리하였다.

A. 실체적인 측면¹⁰

160.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 상황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법집행기관 차량을 상대로 법에 어긋나는 폭력적인 공격을 가한 사안을 심리하였다. 증거에 따르면 발포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소화기를 집어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기에 전에 구두로 경고하였고, 재판소는 이러한 행동에 차량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재판소는 경찰관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정직하게 믿었다고 인정하였고, 이는 제 2 조제 2 항제(a)호에 명시된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의 보호”를 위한 치명적 무력 사용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 2 조 실체적인 측면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61. 반면 *Güleç v. Turkey*, 1998 사건 § 71 에서 재판소는 시위 도중 청구인의 아들이 기관총으로 사망한 사안을 살펴보았다. 재판소는, 제 2 조에 따라 무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도

9. [유럽인권협약 제 2 조에 대한 해설서: 생명권](#) 참조.

10. [유럽인권협약 제 2 조에 대한 해설서: 생명권 II 및 III](#) 참조.

있고, 심지어 무력 사용이 정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목적과 수단(즉, 사용된 무기의 종류) 사이에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본 사건과 같이 국가기관이 오로지 치명적인 무기만을 장착한 채 대응한 것은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¹¹

162. 이와 유사하게, *Şimşek and Others v. Turkey*, 2005 사건 §§ 104–133 에서도 재판소는 경찰관들이 최루가스, 물대포, 고무탄 등 생명에 위협이 덜한 수단을 먼저 사용하지 않고 시위대를 향해 곧바로 실탄을 발사하였기 때문에 제 2 조의 실제적 측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Nagmetov v. Russia* [GC], 2017 사건 § 45 에서는 최루가스탄이 청구인을 향해 직접 발사되어 사망에 이른 점도 제 2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또한, *Ataykaya v. Turkey*, 2014 참조).

163. *Boboc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2 사건 §§ 49–51 에서 재판소는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을 경찰이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협약 제 2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한 유로마이단 항의시위를 과도한 공권력으로 진압하려 했던 당국의 전략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사안에 관한 *Lutsenko and Verbytsky v. Ukraine*, 2021 사건 § 93 에서 재판소는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자들이 제 2 청구인의 형제를 납치·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제 2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64. 제 2 조는 항의시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위 참가자의 생명권을 보호한다. *Gülşenoğlu v. Turkey*,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한 시위자가 경찰서로 연행된 후 체포한 경찰관의 총격으로 후두부를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제 2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65. *Isaak v. Turkey*, 2008 사건 §§ 110–115 에서, 사망자는 시위 참여한 후 완충지대에서 비무장 상태로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제복을 착용한 5명의 경찰관을 포함하여 약 15~20 명에게 구타를 당한 끝에 사망하였다. 재판소는 사망자가 공격 당시 고립된 시위자였고 비무장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폭력 행위에 사용된 공권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그 목적에 비해 명백하게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66. 재판소는 시위 현장에 있던 무관한 제 3 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에도 제 2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Andreou v. Turkey*, 2009 사건에서, 청구인은 시위대와 무장 병력 간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생명이 위협하였다. 재판소는 시위대가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실탄 사격은

11.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2019년 8월), [법 집행에서 덜 치명적인 무기에 관한 유엔인권지침](#), § 1.1. 참조.

시위대는 물론 무관한 제 3자에게도 중상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발포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경고사격조차 없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중시하였다. 특히 재판소는 청구인이 무기를 소지하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총격은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의 보호”를 위한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 2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67. *Fraisie and Others v. France*, 2025 사건에서, 한 학생이 댐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군사경찰 간의 폭력적인 충돌 중 군사경찰이 발사한 섬광탄 폭발로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무력 사용은 다양한 조항에 의해 규율되었는데, 이러한 조항들의 조합으로 인해 적용되는 법적 틀이 복잡해져 법의 이해도와 접근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틀은 총기 사용을 허용했지만, 어떤 무기가 위협에 가장 적합한지 또는 그러한 무기를 진정으로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필요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진정으로 단계적인 무력 사용을 허용하기에 완전하지도, 충분히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122-24). 문제의 수류탄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무기 제공은 사용에 대한 정확하고 보호적인 틀이 부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125-26). 또한, 작전 준비 및 감독상의 미비점, 특히 관련 시점에 현장에 민간 당국이 부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 수준이 충족되지 못했다(§§ 127-34).

B. 절차적 측면¹²

168. *Şimşek and Others v. Turkey*, 2005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친척들은 시위 도중 경찰관에 의해 사망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의 경우 사망 경위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사하지 않았고, 국내 법원의 경우 시위 진압 작전 수행의 미흡함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 무력 사용을 보장하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당국의 책임을 어느 시점에서도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Nagmetov v. Russia* [GC], 2017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당국이 총격을 가한 자를 식별하고 기타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절차적 측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69. *Gülşenoğlu v. Turkey*, 2007 사건에서, 시위 도중 청구인의 형제를 체포한 후 총으로 쏜 경찰관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1 심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 년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후 절차적 결함과 하자를 이후로 대법원(파기원·Court of

12. 유럽인권협약 제 2 조에 대한 해설서: 생명권 § IV 참조.

Cassation)에서 파기되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절차적 대응이 신속하거나 실효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170. 반정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Association “21 December 1989” and Others v. Romania*,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해자 유족들이 독립적인 법원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 2 조의 절차적 측면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수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171. 이와 유사하게, *Lutsenko and Verbytsky v. Ukraine*, 2021 사건 § 72 에서, 재판소는 유로마이단 항의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제 2 청구인의 친족 사망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실효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제 2 조 절차적 측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71. 재판소는 또한 사망 사건 책임자를 장기간 특정하거나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 2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Isaak v. Turkey*, 2008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후 11 년이 경과하였고, *Pastor and Țiclete v. Romania*, 2011 사건에서는 형사 수사가 개시된 후 16 년 이상, 루마니아에 대해 협약이 발효된 날부터 기산하여도 11 년 이상 지났으며, *Elena Apostol and Others v. Romania*, 2016 사건 및 *Ecaterina Mirea and others v. Romania*, 2016 사건에서는 20 년이 경과한 뒤에도 책임자 특정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반이 인정되었다.

IV.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금지(제 3 조)

협약 제3조

“누구도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A. 적용 범위

173.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제 3 조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전시(戰時)나 기타 비상사태에도 제한될 수 없으며,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는다. 제 3 조에서 의미하는 학대는 공익을 이유로 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테러나 조직범죄에 맞서 싸우거나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여도 국가가 제 3 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Gäfgen v. Germany* [GC], 2010, § 176).

174. 재판소는, 학대가 제 3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려면, 심각성의 최소기준(minimum level of severity)에 도달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Bouyid v. Belgium* [GC], 2015, § 86). 심각성 평가는 사안에 따른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 대우의 지속 시간, 신체적·정신적 영향, 경우에 따라 피해자 성별, 연령 및 건강 상태(*Jalloh v. Germany* [GC], 2006, § 67; *Svinarenko and Slyadnev v. Russia* [GC], 2014, § 114)
- 학대를 가한 목적(*Gäfgen v. Germany*, [GC], 2010, § 88)
- 행위에 내재된 의도 또는 동기(다만,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도 제 3 조 위반이 전적으로 부정되지 않음)(*V. v. the United Kingdom* [GC], 1999, § 71)
- 학대를 가한 맥락(예: 긴장과 감정이 고조된 상황)(*Selmouni v. France* [GC], 1999, § 104).

175. 학대가 심각성의 최소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이는 신체에 실제로 상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우가 개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고,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결여하거나 이를 훼손하며, 공포·불안·열등감을 불러일으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저항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굴욕적인 대우로 규정할 수 있고, 제 3 조의 금지 범위에도 포함된다. 이러한 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한다. 심지어 타인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인식에서 스스로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에도, 제 3 조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Bouyid v. Belgium* [GC], 2015, § 87).

176. 재판소는 판례에서, 사전에 계획된 치료로 수 시간에 걸쳐 지속된 결과 실질적인 신체 상해 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다면 “비인도적” 대우라고 보았다(*Labita v. Italy* ([GC], 2000, § 120; *Ramirez Sanchez v. France* [GC], 2006, § 118). 또한, 피해자에게 공포·불안·열등감을 불러일으켜 굴욕감과 비하감을 유발하거나, 정신적·신체적 저항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치료, 또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몰아가는 치료는 “굴욕적인” 이라고 판결하였다(*Jalloh v. Germany* [GC], 2006, § 68).

177. *Gäfgen v. Germany* [GC], 2010 사건 § 90 에 따라, 고문으로 학대를 분류할 때, 재판소는 의도적으로 가한 비인도적 대우로 인하여 매우 심각하고 극심한 고통을 초래한 경우,

특별한 낙인을 부여하였다(*Selmouni, v. France* [GC], 1999, § 96). 고문은 고통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정보 획득, 처벌 부과, 피해자 위협 등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고통 또는 고문 유발이라는 목적 요소를 포함한다(*Aksoy v. Turkey*, 1996, § 115).¹³

178. 다만,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했거나, 더 일반적으로는 법집행관과 대면한 상황이라면, 재판소는 심각성의 기준선이라는 개념이 ‘그 기준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협약의 본질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법집행관이 개인을 대할 때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제 3 조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은 특정한 개인의 행위로 인하여 물리적 힘의 사용이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닌 상황인데도 법집행관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그 물리력이 해당 개인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관계없이 적용한다(*Bouyid v. Belgium* [GC], 2015, § 101). 재판소는 이 원칙을 집회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도 적용하였다(*Navalnyy and Gunko v. Russia*, 2020, §§ 41 및 48; *Zakharov and Varzhabetyan v. Russia*, 2020, §§ 62 및 71). 아울러, 해당 대우가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은 가중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Navalnyy and Gunko v. Russia*, 2020, § 48).

179. 마지막으로,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가 행위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가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는 지방 기구의 행위 역시 해당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Djavit An v. Turkey*, 2003, § 22).

180. 이와 유사하게, 국가는 공권력의 지시를 받고 행위하거나, 최소한 공권력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발생한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Lutsenko and Verbytsky v. Ukraine*, 2021, §§ 90–93).

B. 실체적인 측면

181. 공공 집회 해산 과정에서 무력 사용이라는 맥락에서, *Oya Ataman v. Turkey*, 2006 사건 § 17에서 재판소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이른바 “최루제 분사기”를 사용한 사실을 심리하였다. 최루 가스는 눈물과 호흡 곤란 등 신체적 불쾌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소는 1993년 1월 13일 체결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13.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 1 조 참조.

협약”을 근거로, “최루제 분사기” 사용이 국내 폭동 통제 등 법 집행을 위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182. 다만, *Abdullah Yaşa and Others v. Turkey*, 2013 사건 § 43 에서 재판소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 관한 기존 판례법이 최루탄 사용이 수반된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최루탄 발사를 포함한 경찰 작전은 단지 허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제한되어야 하며, 자의적인 행위, 과잉 진압, 피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3. 나아가,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협약 제 3 조는 집단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의 무력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특히 체포 과정에서의 무력 사용은 허용되나, 그러한 무력은 반드시 불가피할 경우에만 과도하지 않게 사용되어야 한다(*Muradova v. Azerbaijan*, 2009, § 109; *Necdet Bulut v. Turkey*, 2007, § 23; *Zakharov and Varzhabetyan v. Russia*, 2020, § 74).

184. *Cestaro v. Italy*,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G8 정상회의 기간 도중 발생한 충돌 및 위법한 재산 훼손 이후, 보안군이 시위대를 구타하고 가혹하게 다룬 것을 고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ushegh Saghatelyan v. Armenia*,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시위 후 경찰서로 연행된 뒤 발생한 부상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어 협약 제 3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85. *Izci v. Turkey*, 2013 사건에서 청구인이 가담한 시위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로 마무리되었다 재판소가 검토한 당시 영상 자료에는 경찰이 다수의 시위자들을 곤봉으로 가격하고 최루가스를 분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상점 안으로 피신한 여성들조차 경찰이 끌고 나와 구타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폭력 사용과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최루가스 분사로 인하여 협약 제 3 조가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86. *Annenkov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현지 시장을 개발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항의하여 점거 농성을 벌이던 상인들을 국가 당국이 폭력적으로 체포한 행위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중상을 초래한 물리력의 사용이 협약 제 3 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187. *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2021 사건 §§ 364-374, 392-396, 418-422, 429-433 및 평화롭게 시작한 유로마이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당국이 사용한 폭력적인 전략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경찰이 청구인들에게 대응할 때 그들의 행위 때문에 물리력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엄격하게 존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 여러 사유에

근거하여 제 3 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특히 청구인들은 고무 밧/또는 플라스틱 곤봉 등으로 구타당하였고, 그 과정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모욕적인 언사도 동반하여 학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청구인에 대해서는 고문에 해당한다(또한, *Lutsenko and Verbytsky v. Ukraine*, 2021, §§ 78–93; *Kadura and Smaliy v. Ukraine*, 2021, §§ 97 및 113 참조).

C. 절차적 측면

188. 제 3 조가 암묵적으로 뜻하는 바에 따르면, 개인이 경찰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당국 등에 의해 제 3 조를 침해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는 경우, 실효적이고 공식적인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Bouyid v. Belgium* [GC], 2015, §§ 115–116; *Ostroveņecs v. Latvia*, 2017, § 71). 국가 기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된 물리력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해당 행위의 비례성 문제 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공권력 행사가 적절히 규율되고 조직되어, 인명 피해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도록 준비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에 쌍방의 폭력이 수반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면, 폭력적으로 행동한 시위자뿐만 아니라 법 집행 당국의 행위에 대해서도 특히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 재판소는, 개별적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Muradova v. Azerbaijan*, 2009, § 113–114), 이러한 충돌의 기원과 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참가자 개인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 당국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Zakharov and Varzhabetyan v. Russia*, 2020, §§ 53–55).

189. 예를 들어, 무단 시위 취재 도중 경찰에게 구타당한 언론인에 관한 *Najafli v. Azerbaijan*,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러 이유로 인하여 수사가 제 3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가장 중대한 결함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청구인을 구타한 혐의를 받은 바로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규명 업무가 그 기관 자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이다.

190. *Cestaro v. Italy*, 2015 사건에서 청구인은 G8 정상회의 도중 이탈리아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재판소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당국의 실패와 해당 급습과 관련된 형사소추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된 점을 고려하여, 협약 제 3 조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2025년 *Cioffi v. Italy*, 2025, §§ 96 and 98 에서, 징역형 및 부수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경찰관의 학대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의 비공개 조치가 해당 공무원들이 국가 기관의 대리인으로서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의 전반적인 대응이, 문제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처벌하고 충분한 억제 효과를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¹⁹¹. 이와 유사하게, 유로마이단(Maidan) 항의시위의 폭력적 해산에 관한 *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2021 사건 §§ 337-358, 377-391, 407-417, 425-428 에서, 재판소는 해당 사건 수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수사 및 관련 절차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학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모든 가해자를 특정하지도 못했다. 나아가, 수사의 지연과 누락으로 인해 수사가 본격화되었을 무렵에는 일부 용의자와 범죄 혐의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당국의 관할권 밖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 3 조 절차적 측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또한 *Lutsenko and Verbytsky v. Ukraine*, 2021, §§ 61-73; *Kadura and Smaliy v. Ukraine*, 2021, §§ 94-96 및 107-112 참조).

192. *Mushegh Saghatelyan v. Armenia*,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위 이후 체포 및 구금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시위 참가자)이 주장한 학대 사실에 대해 당국이 아무런 수사 조치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이 효과적인 수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193. *Annenkov and Others v. Russia*, 2017 사건에서, 현지 시장을 민간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항의하며 시장을 점거하던 일부 상인들이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 재판소는 국내 수사에서 의학적 증거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청구인들의 진술에 대한 비교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결함을 지적하였고, 이는 협약 제 3 조상 실효적 수사를 받을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94. 대규모 집회 또는시위와 관련하여, 시위대를 대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법과 질서 유지 또는 체포를 위하여 가면을 착용한 경찰관을 배치하는 경우, 고유번호(warrant number) 같은 식별 가능한 표식을 눈에 띄게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표시하면 익명성은 보장하면서도 작전 수행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경찰관을 추후 식별하고 조사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Hentschel and Stark v. Germany*, 2017, § 91).

195. 따라서, 헬멧을 착용하고 식별 표식이 없는 경찰관들이 구타하고 최루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Hentschel and Stark v. Germany*,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식별 표식 없이 헬멧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배치한 점과 그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이 철저한 수사 조치로 상쇄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수사가 실효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96. 마찬가지로, *İzci v. Turkey*, 2013 사건에서 국내 법원은 경찰관들이 신원 확인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식별 번호와 얼굴을 숨겼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국가 당국의 수사는 대부분의 경찰관을 특정하는 데 실패하였고, 결국 단 6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소는 협약 제 3 조의 절차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V.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 5 조)

협약 제5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한 유죄판결 후 합법적으로 구금된 경우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이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범행이나 범행 후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를 권한 있는 사법기관에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기관에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e)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불량자에 대한 합법적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되거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2.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의 체포 이유 및 모든 혐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아야 한다.

3. 본 조 제 1 항제(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판사 또는 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그 밖의 관리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에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의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본 조의 규정에 반하는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자유의 박탈¹⁴

197. 자유 박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 된 조치의 유형, 기간, 영향, 집행 방식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Medvedyev and Others v. France* [GC], 2010, § 73; *Creangă v. Romania* [GC], 2012, § 91; *De Tommaso v. Italy* [GC], 2017, § 80; *Guzzardi v. Italy*, 1980, § 92).

198. 이와 관련하여, 강제성의 요소는 제 5 조제 1 항이 의미하는 자유 박탈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Gillan and Quinton v. the United Kingdom*, 2010, § 57 및 *Foka v. Turkey*, 2008, §§ 74–79). 다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 당국의 조치가 추구한 목적은, 자유 박탈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Rozhkov v. Russia (no. 2)*, 2017, § 74).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보호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 하더라도 자유의 박탈에 해당할 수 있다(*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2016, § 71).

199. 제 5 조제 1 항은 자유로운 이동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제 4 의정서 제 2 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 맥락에서도 확인되었다. 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문제 된 조치의 유형, 기간, 영향 및 집행 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일반 대중이 대중교통 이용, 고속도로 이동, 축구 경기 관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인 이동 제한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제한은,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고, 중상이나 손해의 실제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유지되었다면, 제 5 조제 1 항의 의미에서 “자유 박탈”로 볼 수 없다(*Austi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2, § 59).

200. 또한, 작전상 결정을 내릴 때 경찰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을 보장하여야 한다(*P.F. and E.F. v. the United Kingdom* (dec.), 2010, § 41). 제 5 조는, 경찰이 자의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제 5 조의 근본 원칙을 준수하는 한, 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 보호라는 경찰의 임무 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Saadi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67–74).

201. *Austi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경찰이 비상선을 쳐서 군중을 가두는, 이른바 “케틀링(kettling)” 또는 포위 방식을 두고 협약 제 5 조제 1 항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경찰이 군중 통제를 목적으로 보다 강경한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포위 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오히려 군중 속에서

14. 유럽인권협약 제 5 조에 대한 해설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참조.

더 큰 부상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할 방법을 피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 5 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소는, 만약 경찰이 심각한 부상이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위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 조치의 강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은 협약 제 5 조에 해당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또한, 재판소가 *Austin and Others* 판례를 재확인하며 제 5 조의 적용은 부정하였으나 제 4 의정서 제 2 조에 따라 사건을 심사하였고, “케틀링” 진압 방식의 적용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해당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Auray and Others v. France*, 2024, §§ 65-74 및 84-95 참조).

202. 행정상 구금의 여러 형태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예를 들어 *Elvira Dmitriyeva v. Russia*, 2019 사건 § 95 에서, 행정위반 혐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약 4 시간 동안 구금되었던 청구인에 대해, 해당 기간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또한,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2017 참조).

203. *Ishkhanyan v. Armenia*, 2025 사건에서, 청구인이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 되어 증인으로 조사받고 마약 검사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상급 경찰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조기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전적인 통제 하에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재판소는 7 시간 이상 경찰의 전적인 통제 하에 있었던 것은 자유의 박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145-52).

204. 대조적으로, *Shimovolos v. Russia*, 2011 사건에서의 구금은 45 분을 넘지 않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받으며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경찰의 허가 없이는 경찰서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재판소는 짧은 구금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성 요소가 협약 제 5 조제 1 항이 말하는 자유의 박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5. 재판소는 또한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 행사 시 강제성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그 조치의 지속 시간이 짧더라도 자유의 박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Krupko and Others v. Russia*, 2014, § 36; *Foka v. Turkey*, 2008, § 78; *Gillan and Quinton v. the United Kingdom*, 2010, § 57; *Shimovolos v. Russia*, 2011, § 50; *Brega and Others v. Moldova*, 2012, § 43).

206. 예를 들어, *Gillan and Quinton v. the United Kingdom*,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각각 정지 및 수색을 당한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았으나, 그동안 청구인은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수색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만약 수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재판소는 제 5 조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강제성 요소가 협약 제 5 조가 말하는 자유의 박탈을 시사한다고 언급하였다.

B. 합법성

207. 제 5 조제 1 항에서 “합법적” 및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국내법에 대한 준거성을 의미하며, 그 실제적 및 절차적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다만, 국내법상 구금의 “합법성” 여부가 언제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재판소는 나아가, 문제 된 기간의 구금이 협약 제 5 조제 1 항의 목적, 즉 자의적인 방식의 자유 박탈 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Giulia Manzoni v. Italy*, 1997, § 25).

208. 제 5 조제 1 항의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요건¹⁵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의 맥락에도 적용된다.

- *Navalnyy and Yashin v. Russia*, 2014; *Elvira Dmitriyeva v. Russia*, 2019;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2017(청구인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경찰서로 연행한 경우)
- *Mushegh Saghatelyan v. Armenia*, 2018(청구인의 구금 기간이 특별한 사법 명령 없이 법률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72 시간을 초과한 경우)
- *Hakim Aydin v. Turkey*, 2020, § 40(법률상 자유 박탈 조치를 부과할 수 없는 범죄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한 경우)

209. 어떤 법을 적용하려면 그 법은 협약에 명시된 “합법성”(모든 법률은 주어진 상황에서 시민이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Stee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8, § 54).

C. 제 5 조제 1 항 자유 박탈 정당화

210. 재판소는 제 5 조제 1 항에서 자유에 대한 권리의 예외 사유는 한정적이며, 이러한 예외를 좁게 해석하는 것만이 해당 조항의 목적인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일치한다고 설명하였다(*Buzadji v. the Republic of Moldova* [GC], 2016, § 84; *S., v. and A. v. Denmark* [GC], 2018, § 73).

15. 유럽인권협약 제 5 조에 대한 해설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II 참조.

211.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 맥락에서 자유 박탈에 대한 정당화 근거는 제 5 조제 1 항제(b)호 및 제(c)호가 가장 자주 인용된다.¹⁶

212. 예를 들어, *Stee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98 사건에서 제 1 청구인 및 제 2 청구인은 유죄판결을 받고, 타인을 자극하여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취지의 평화유지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여 수감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수감이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제 5 조제 1 항제(b)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13. *Schwabe and M.G. v. Germany*,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위 참가 방지 목적의 구금에 대해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법이 정한 의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이미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구금이 제 5 조제 1 항(b)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또한, *S., v. and A. v. Denmark* [GC], § 83 참조).

214. *Ishkhanyan v. Armenia*, 2025 사건에서, 청구인은 연좌 시위 중 도로를 막지 말라는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연좌 시위가 해산된 이후 현장을 떠나던 중에 체포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종 했다고 볼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제 5 조제 1 항(b)에 따라 청구인을 체포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 (§ 157).

215. 협약 제 5 조제 1 항제(c)호와 관련하여, *Shimovolos v. Russia*, 2011 사건에서는 유럽연합-러시아 정상회담이 러시아 사마라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점에 청구인의 이름이 “감시용 데이터베이스”에 인권운동가로 등록되어 있었다. 재판소는 사마라 기차역에서 청구인을 45 분간 체포한 조치가 특정되지 않은 행정적 또는 형사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협약 제 5 조제 1 항(c)에 따른 정당한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16. 재판소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당국이 처음에는 평화로웠던 유로마이단 항의시위를 과도한 폭력과 자유 박탈을 이용하여 중단시키려는 의도적인 전략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자유 박탈이 정당성을 결여했거나 자의적이었다는 점에서 제 5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2021, §§ 463–478; *Kadura and Smaliy v. Ukraine*, 2021, §§ 126–132; *Dubovtsev and Others v. Ukraine*, 2021, §§ 77–82; *Vorontsov and Others v. Ukraine*, 2021, §§ 42–49). 같은 맥락에서, *Lutsenko and Verbytskyy v. Ukraine*, 2021 사건 § 102 에서 재판소는 시위대가 당국의

16. 유럽인권협약 제 5 조에 대한 해설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III 참조.

지시를 받았거나 그 통제하에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 또는 공모를 받은 개인들에 의해 납치되고 구금된 것은 제 5 조제 1 항이 보장하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17. *Navalnyy v. Russia* [GC],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평화로웠으나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일곱 차례에 걸쳐 체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법원에 회부되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구금되기도 하였고, 법원 출석 전날 밤 내내 구금된 경우도 있었다.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을 재판 전 석방하지 않은 사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협약 제 5 조제 1 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18. *Navalnyy v. Russia (no. 2)*, 2019 사건에서, 국내 법원은 청구인이 수사 중 모스크바를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 전 가택연금을 명령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실제로는 해당 서약을 이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가 자유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으므로 자유 박탈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219. *Krupko and Others v. Russia*, 2014 사건에서, 네 명의 청구인들은 집회 도중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 질문, 지시에 협조하였다. 이들은 어떤 범죄 혐의로도 공식적인 혐의가 있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들의 체포가 “범행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자를 권한 있는 사법기관에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220. *Ishkhanyan v. Armenia*, 2025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5 조제 1 항(c)에 따른 정당화 사유를 심리하면서, 청구인이 개별적인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심리 없이 체포된 피해자라고 판단하였다. 체포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에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행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체포는 청구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158-62).

221. 다만, 약 8 시간 동안 기소 없이 구금된 축구 팬들에 관한 *S., v. and A. v. Denmark* [GC],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5 조제 1 항제(c)호의 두 번째 조건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따른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형사소송 절차 외적인 상황에서도 당국이 개인을 구금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단 이 경우에도 제 5 조의 기본 원칙인 자의적 자유 박탈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22. *Kavala v. Turkey*,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5 조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가 제 5 조제 1 항제(c)호에 근거한 구금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폭력이나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하였다”는 의심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이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금 결정에도 공소장에도 이러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 5 조제 1 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23. 마지막으로, 항의시위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이면의 목적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나, 협약 제 5 조와 결합한 제 18 조¹⁷ 위반 문제를 야기하였다.

224. 예를 들어,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2018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시민사회 운동가이자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한 비정부기구(NGO)의 이사였다. 예정된 시위 직전에 청구인들은 마약 및 화염병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소는, 검찰 당국이 청구인들과 문제의 화염병 간 연관성을 밝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여서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 5 조제 1 항을 단독으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시민사회를 탄압하던 배경과 맞물려, 청구인들을 구금한 실제 목적은 그들의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침묵시키고 처벌하는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였다. 재판소는 협약 제 5 조와 결합한 제 1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25. *Ilgar Mammadov v. Azerbaijan*, 2014 사건에서 청구인은 폭동이 발생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당국을 비판하고 폭동의 실제 상황에 대해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다른 자신의 견해를 담은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공공질서 위반 행위를 조직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공무원에게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 재판소는 해당 형사소추가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은폐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자신이 믿는 바를 전파하려 한 청구인을 침묵시키고 처벌하려는 이면의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협약 제 5 조와 결합한 제 1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D. 자유 박탈 시 보호조치

226. 협약 제 5 조제 3 항은 형사범죄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즉, 제 5 조제 1 항제(c)호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자유의 박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한다(*Aquilina v. Malta* [GC], 1999, § 47 및 *Stephens v. Malta (no. 2)*, 2009, § 52). 이 조항은 특히 범죄 혐의에 따른 자유의 박탈에 대해

17. [유럽인권협약 제 18 조에 대한 해설서: 권리 제한의 한계](#) 참조.

신속하고 자동적인 사법적 통제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석방될 권리를 포함한다.¹⁸ 예방적 구금의 경우, 당사자가 짧은 기간 내에 석방되었다면, 그를 권한 있는 사법기관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적 요건이 제 5 조제 1 항제(c)호의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단기적 예방 구금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S., v. and A. v. Denmark* [GC], 2018, § 126).

227. 제 5 조제 1 항제(c)호의 두 번째 요건에 대해, 재판소는 개인을 권한 있는 사법기관에 회부하기 위한 제 5 조제 1 항제(c)호의 “목적” 요건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요건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요건 충족 여부는 청구인이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구금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신속히 판사에게 회부될 예정이었는지, 또는 그 이전에 석방될 예정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은 제 5 조제 5 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내법상 제 5 조 제 3 항 및 제 5 항에 규정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 행사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단기 구금에 대해 제 5 조제 1 항(c)호의 “목적” 요건이 그 자체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S., v. and A. v. Denmark* [GC], 2018, § 137).

228. 또한, 협약의 인신보호(*habeas corpus*) 조항인 제 5 조제 4 항은 피구금자가 구금에 대한 사법심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권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는 법원에 의해 자신의 구금의 합법성이 “지체 없이” 판단될 권리와, 구금이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 석방 명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¹⁹

18. 유럽인권협약 제 5 조에 대한 해설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IV. B 참조.

19. 유럽인권협약 제 5 조에 대한 해설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VI. B 참조.

VI.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 6 조)

협약 제6조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추의 결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정의의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모든 형사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기소의 성격 내지 이유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보받을 권리

(b) 자신의 변호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권리

(c) 직접 또는 본인이 선택한 법적 조력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는 법적 조력을 위한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정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d)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도록 할 권리,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고 심문받도록 할 권리

(e)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

A. 적용 범위

229. 제 6 조는 오직 개인의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²⁰ 또는 형사소추에 대한 결정²¹에만 적용된다.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의 맥락에서 문제는 주로 협약 제 6 조의 형사 영역에서 발생한다.

20. 유럽인권협약 제 6 조에 대한 해설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민사 영역) | 참조.

21. 유럽인권협약 제 6 조에 대한 해설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형사 영역) || 참조.

230. 예를 들어, *Kasparov and Others v. Russia*,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체포된 행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 절차가 제 6 조(형사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무단 시위에 가담한 행위가 공공질서 위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시위의 방식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위반행위는 특정한 지위를 가진 집단이 아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성격의 범죄라고 보았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해당 조항상 부과 가능한 최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부과된 벌금이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처벌과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형벌의 성격도 보여주는 요소였다.

231. 마찬가지로, *Navalnyy v. Russia* [GC],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 된 위반 행위는 일반적으로 형사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고 최대 15 일에 달하는 처벌의 기간과 행정구금이라는 집행 방식을 고려할 때 형벌로서의 중대성을 지니므로, 해당 행정절차가 협약 제 6 조제 1 항의 독자적 의미에서의 형사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32. *Mikhaylova v. Russia*, 2015 사건에서 관련 법 조항은 최대 벌금(28 유로 상당) 및/또는 15 일의 실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혐의가 형사적 성격을 띠는 강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추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복될 수 있으며, 특히 구금의 성격, 기간 또는 집행 방식을 고려할 때 “중대한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반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조항 내 절차적 보장이 해당 절차가 형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하였다.

B. 공정한 재판 보장

233. 재판소는 제 6 조에 포함된 일반적인 공정성 요건은 해당 범죄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형사절차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Ibrahim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6, § 252). 따라서 이러한 원칙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²²

234. 예를 들어, *Gafgaz Mammadov v. Azerbaijan*, 2015 사건 § 76 및 *Huseynli and Others v. Azerbaijan*, 2016 사건에서 제 6 조제 3 항제(b)호가 보장하는 변론 준비에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는 약식으로 진행된 사전절차, 재판 전 청구인들이 외부와

22. 유럽인권협약 제 6 조에 대한 해설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형사 영역) | 참조.

차단된 점, 사전절차에서의 변호인 조력의 부재, 청구인에게 행정위반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여러 절차적 결함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 재판소는 두 사건 모두에서, 청구인들이 변론을 준비하고 수사 결과를 숙지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35. *Karelin v. Russia*, 2016 사건 §§ 69-84 에서 재판소는 소추 당사자가 부재한 점이 무죄추정 원칙의 작동에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재판부의 공평성 여부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역으로 재판부의 공평성 결여가 무죄추정 원칙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하였다.

236. 이와 유사하게, *Elvira Dmitriyeva v. Russia*, 2019 사건에서 청구인은 행정위반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참여한 점, 소추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1 심 및 항소심 법원이 스스로 유죄 입증의 역할을 수행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제 6 조 제 1 항 중에서도 특히 공평성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37. *Butkevich v. Russia*,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구두심리를 통해 행정위반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추인이 부재하였고, 제 1 심 법원이 체포 경찰관이나 기록에 언급된 자(재판소는 이들을 증인으로 간주함)를 심문할 기회를 피고인 측에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협약 제 6 조 제 1 항 및 제 3 항제(d)호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38. *Navalnyy v. Russia* [GC],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사건 경위에 대한 경찰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 여섯 건의 사례에 대해, 협약 제 6 조 제 1 항 및 제 3 항제(d)호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39. 마찬가지로, *Mushegh Saghatelyan v. Armenia*, 2018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경찰 측의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여, 제 6 조 제 1 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제 6 조 제 3 항제(d)호가 일반적으로는 증인 소환의 필요 여부를 국내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그 판단은 재판소의 면밀한 심사 대상이 된다.

240. *Kasparov and Others v. Russia*,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항의시위 도중 체포된 경위에 대해 입장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가 없었던 점이 무기대등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41. *Olga Kudrina v. Russia*, 2021 사건 §§ 38-41 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항의시위 참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청구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밝혀줄 수 있었던 증인들을 심문하지 않은 점이 협약 제 6 조 제 1 항 및 제 3 항제(d)호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비록 청구인이 증인의 출석과 심문을 요청할 때 그 필요성을 조리 있게 논하지는 않았더라도, 청구인의 사건에서 해당 증언의 관련성은 명백했다고 보았다.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협약 제 44 조의 의미에 따라 최종이 아닌 소재판부 판결은 아래 목록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 44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재판부 판결은 (a) 당사자들이 대재판부에 회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b) 대재판부로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c) 대재판부 패널이 제 43 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됩니다. 대재판부 패널이 회부 요청을 승인하면, 소재판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이어지는 대재판부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수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ies), 위원회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또는 둘 중 하나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 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 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 3 자가 작성한 100 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인용된 사건에 대한 언어별 번역본은 모두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Abdullah Yaşa and Others v. Turkey, no. 44827/08, 16 July 2013

Adalı v. Turkey, no. 38187/97, 31 March 2005

Ahmet Yıldırım v. Turkey, no. 3111/10, ECHR 2012

Alekseyev v. Russia, nos. 4916/07 and 2 others, 21 October 2010

Alici and Others v. Turkey, no. 70098/12, 24 May 2022

Aksoy v. Turkey, 18 December 1996, Reports 1996–VI
Andreou v. Turkey, no. 45653/99, 27 October 2009
Annenkov and Others v. Russia, no. 31475/10, 25 July 2017
Aquilina v. Malta [GC], no. 25642/94, ECHR 1999–III
Ashughyan v. Armenia, no. 33268/03, 17 July 2008
Associated Society of Locomotive Engineers and Firemen (ASLEF) v. the United Kingdom, no. 11002/05, 27 February 2007
Association “21 December 1989” and Others v. Romania, nos. 33810/07 and 18817/08, 24 May 2011
Ataykaya v. Turkey, no. 50275/08, 22 July 2014
Auray and Others v. France, no. 1162/22, 8 February 2024
Austi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39692/09 and 2 others, ECHR 2012
Autronic AG v. Switzerland, 22 May 1990, Series A no. 178

—B—

Barankevich v. Russia, no. 10519/03, 26 July 2007
Barraco v. France, no. 31684/05, 5 March 2009
Bayev and Others v. Russia, nos. 67667/09 and 2 others, 20 June 2017
Bédat v. Switzerland [GC], no. 56925/08, 29 March 2016
Berkman v. Russia, no. 46712/15, 1 December 2020
Berladir and Others v. Russia, no. 34202/06, 10 July 2012
Boboc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44592/16, 7 June 2022
Bodson and Others v. Belgium, nos. 35834/22 and 15 others, 16 January 2025
Bogay and Others v. Ukraine, no. 38283/18, 3 April 2025
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ECHR 2005–VI
Bouyid v. Belgium [GC], no. 23380/09, ECHR 2015
Bączkowski and Others v. Poland, no. 1543/06, 3 May 2007
Brega and Others v. Moldova, no. 61485/08, 24 January 2012
Bukta and Others v. Hungary, no. 25691/04, ECHR 2007–III

Bumbeş v. Romania, no. 18079/15, 3 May 2022

Butkevich v. Russia, no. 5865/07, 13 February 2018

Buzadji v. the Republic of Moldova [GC], no. 23755/07, 5 July 2016

—C—

Central Unitaria de Traballadores/as v. Spain, no. 49363/20, 17 October 2024

Cestaro v. Italy, no. 6884/11, 7 April 2015

Chkhartishvili v. Georgia, no. 31349/20, 11 May 2023

Chorherr v. Austria, 25 August 1993, Series A no. 266–B

Çiçek and Others v. Türkiye, nos. 48694/10 et al., 22 November 2022

Cisse v. France, no. 51346/99, ECHR 2002–III

Cioffi v. Italy, no. 17710/15, 5 June 2025

Coster v. the United Kingdom [GC], no. 24876/94, 18 January 2001

Creangă v. Romania [GC], no. 29226/03, 23 February 2012

Csiszer and Csibi v. Romania, nos. 71314/13 and 68028/14, 5 May 2020

—D—

Dareskizb Ltd v. Armenia, no. 61737/08, 21 September 2021

De Tommaso v. Italy [GC], no. 43395/09, 23 February 2017

Delfi AS v. Estonia [GC], no. 64569/09, ECHR 2015

Dilipak v. Turkey, no. 29680/05, 15 September 2015

Disk and Kesk v. Turkey, no. 38676/08, 27 November 2012

Djavit An v. Turkey, no. 20652/92, ECHR 2003–III

Drozd v. Poland, no. 15158/19, 6 April 2023

Dubovtsev and Others v. Ukraine, nos. 21429/14 and 9 others, 21 January 2021

—E—

Ecaterina Mirea and others v. Romania, nos. 43626/13 and 69 others, 12 April 2016

Eckert v. France, no. 56270/21, 24 October 2024

Ekrem Can and Others v. Turkey, no. 10613/10, 8 March 2022

Elena Apostol and Others v. Romania, nos. 24093/14 and 16 others, 23 February 2016

Elvira Dmitriyeva v. Russia, nos. 60921/17 and 7202/18, 30 April 2019

Emin Huseynov v. Azerbaijan, no. 59135/09, 7 May 2015

Éva Molnár v. Hungary, no. 10346/05, 7 October 2008

Ezelin v. France, 26 April 1991, Series A no. 202

—F—

Fáber v. Hungary, no. 40721/08, 24 July 2012

Feridun Yazar v. Turkey, no. 42713/98, 23 September 2004

Foka v. Turkey, no. 28940/95, 24 June 2008

Fraisse and Others v. France, nos. 47626/21 and 22525/21, 27 February 2025

Frumkin v. Russia, no. 74568/12, 5 January 2016

—G—

Gafgaz Mammadov v. Azerbaijan, no. 60259/11, 15 October 2015

Gäfgen v. Germany [GC], no. 22978/05, ECHR 2010

Geylani and Others v. Türkiye, no. 10443/12, 12 September 2023

Gillan and Quinton v. the United Kingdom, no. 4158/05, ECHR 2010 (extracts)

Giulia Manzoni v. Italy, 1 July 1997, Reports 1997–IV

Giuliani and Gaggio v. Italy [GC], no. 23458/02, ECHR 2011 (extracts)

Gorzelik and Others v. Poland [GC], no. 44158/98, ECHR 2004–I

Gsell v. Switzerland, no. 12675/05, 8 October 2009

Güleç v. Turkey, 27 Jul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V

Gülşenoğlu v. Turkey, no. 16275/02, 29 November 2007

Gül and Others v. Turkey, no. 4870/02, 8 June 2010

Gün and Others v. Turkey, no. 8029/07, 18 June 2013

Guzzardi v. Italy, 6 November 1980, Series A no. 39

—H—

Hakobyan and Others v. Armenia, no. 34320/04, 10 April 2012

Hakim Aydın v. Turkey, no. 4048/09, 26 May 2020

Handzhiyski v. Bulgaria, no. 10783/14, 6 April 2021

Harutyunyan and Others v. Armenia (dec.), no. 45401/15, 1 April 2025

Hentschel and Stark v. Germany, no. 47274/15, 9 November 2017

Huseynli and Others v. Azerbaijan, nos. 67360/11 and 2 others, 11 February 2016

Hyde Park and Others v. Moldova, no. 33482/06, 31 March 2009

Hyde Park and Others v. Moldova (no. 3), no. 45095/06, 31 March 2009

Hyde Park and Others v. Moldova (nos. 5 and 6), nos. 6991/08 and 15084/08, 14
September 2010



Ibrahim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50541/08 and 3 others, 13
September 2016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nos. 63571/16 and 5 others, 13 February
2020

Ibrahimov and Others v. Azerbaijan, nos. 69234/11 and 2 others, 11 February 2016

Ishkhanyan v. Armenia, no. 5297/16, 13 February 2025

İmrek v. Turkey, no. 45975/12, 10 November 2020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8 January 1978, Series A no. 25

Isaak v. Turkey, no. 44587/98, 24 June 2008

İzci v. Turkey, no. 42606/05, 23 July 2013

Ilgar Mammadov v. Azerbaijan, no. 15172/13, 22 May 2014

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no. 73235/12, 12 May 2015

Işıkırık v. Turkey, no. 41226/09, 14 November 2017



Jalloh v. Germany [GC], no. 54810/00, ECHR 2006–IX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5 July 2016

—K—

Kablis v. Russia, nos. 48310/16 and 59663/17, 30 April 2019
Kadura and Smaliy v. Ukraine, nos. 42753/14 and 43860/14, 21 January 2021
Karelin v. Russia, no. 926/08, 20 September 2016
Kasparov and Others v. Russia, no. 21613/07, 3 October 2013
Kasparov v. Russia, no. 53659/07, 11 October 2016
Kavala v. Turkey, no. 28749/18, 10 December 2019
Kazan v. Türkiye, no. 58262/10, 6 June 2023
Kemal Çetin v. Turkey, no. 3704/13, 26 May 2020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no. 16483/12, 15 December 2016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ECHR 2012
Kopp v. Switzerland, 25 March 1998, *Reports* 1998-II
Krupko and Others v. Russia, no. 26587/07, 26 June 2014
Kruslin v. France, 24 April 1990, Series A no. 176-A
Kudrevičius and Others v. Lithuania [GC], no. 37553/05, ECHR 2015

—L—

Labita v. Italy ([GC], no. 26772/95, ECHR 2000-IV
Laguna Guzman v. Spain, no. 41462/17, 6 October 2020
Laurijse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nos. 56896/17 and 4 others, 21 November
2023
Lashmankin and Others v. Russia, nos. 57818/09 and 14 others, 7 February 2017
Lutsenko and Verbytskyy v. Ukraine, nos. 12482/14 and 39800/14, 21 January 2021

—M—

Maestri v. Italy [GC], no. 39748/98, ECHR 2004-I
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no. 18030/11, 8 November 2016
Magyar Kétfarkú Kutya Párt v. Hungary [GC], no. 201/17, 20 January 2020
Makarashvili and Others v. Georgia, nos. 23158/20 et al., 1 September 2022
Makhmudov v. Russia, no. 35082/04, 26 July 2007

Malofeyeva v. Russia, no. 36673/04, 30 May 2013
Manannikov v. Russia, no. 9157/08, 1 February 2022
Mariya Alekhina and Others v. Russia, no. 38004/12, 17 July 2018
Mătăsaru v. the Republic of Moldova, nos. 69714/16 and 71685/16, 15 January 2019
Medvedyev and Others v. France [GC], no. 3394/03, ECHR 2010
Mikhaylova v. Russia, no. 46998/08, 19 November 2015
Mkrtchyan v. Armenia, no. 6562/03, 11 January 2007
Muradova v. Azerbaijan, no. 22684/05, 2 April 2009
Murat Vural v. Turkey, no. 9540/07, 21 October 2014
Mushegh Saghatelyan v. Armenia, no. 23086/08, 20 September 2018
Mustafa Hajili and Others v. Azerbaijan, nos. 69483/13 et al., 6 October 2022
Mzhavanadze and Rukhadze v. Georgia, nos. 29760/21 and 33931/21, 15 July 2025



Nagmetov v. Russia [GC], no. 35589/08, 30 March 2017
Najafli v. Azerbaijan, no. 2594/07, 2 October 2012
Navalnyy and Gunko v. Russia, no. 75186/12, 10 November 2020
Navalnyy and Yashin v. Russia, no. 76204/11, 4 December 2014
Navalnyy v. Russia [GC], nos. 29580/12 and 4 others, 15 November 2018
Necdet Bulut v. Turkey, no. 77092/01, 20 November 2007
Nemtsov v. Russia, no. 1774/11, 31 July 2014
Nurettin Aldemir and Others v. Turkey, nos. 32124/02 and others, 18 December 2007



Obote v. Russia, no. 58954/09, 19 November 2019
Olga Kudrina v. Russia, no. 34313/06, 6 April 2021
Öllinger v. Austria, no. 76900/01, ECHR 2006–IX
Ostroveņecs v. Latvia, no. 36043/13, 5 October 2017
Ouranio Toxo and Others v. Greece, no. 74989/01, ECHR 2005–X (extracts)
Oya Ataman v. Turkey, no. 74552/01, ECHR 2006–XIV

—P—

P.F. and E.F.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8326/09, 23 November 2010
Pastor and Țiclete v. Romania, nos. 30911/06 and 40967/06, 19 April 2011
Pentikäinen v. Finland [GC], no. 11882/10, ECHR 2015
Peradze and Others v. Georgia, no. 5631/16, 15 December 2022
Perinçek v. Switzerland, no. 27510/08, 17 December 2013
Petropavlovskis v. Latvia, no. 44230/06, ECHR 2015
Plattform “Ärzte für das Leben” v. Austria, 21 June 1988, Series A no. 139
Primov and Others v. Russia, no. 17391/06, 12 June 2014
Promo Lex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42757/09, 24 February 2015
Protopapa v. Turkey, no. 16084/90, 24 February 2009

—R—

Rai and Evans v. The United Kingdom, nos. 26258/07 and 26255/07, (dec.), 17
November 2009
Ramirez Sanchez v. France [GC], no. 59450/00, ECHR 2006–IX
Rashad Hasanov and Others v. Azerbaijan, nos. 48653/13 and 3 others, 7 June 2018
Razvozhayev v. Russia and Ukraine and Udaltsov v. Russia, nos. 75734/12 and 2
others, 19 November 2019
Rekvényi v. Hungary [GC], no. 25390/94, ECHR 1999–III
Rotaru v. Romania [GC], no. 28341/95, ECHR 2000–V
Rozhkov v. Russia (no. 2), no. 38898/04, 31 January 2017
Russ v. Germany, no. 44241/20, 20 May 2025

—S—

S., v. and A. v. Denmark [GC], nos. 35553/12 and 2 others, 22 October 2018
Saadi v. the United Kingdom [GC], no. 13229/03, ECHR 2008
Sáska v. Hungary, no. 58050/08, 27 November 2012
Schwabe and M.G. v. Germany, nos. 8080/08 and 8577/08, ECHR 2011 (extracts)
Selmouni v. France [GC], no. 25803/94, ECHR 1999–V

Shapovalov v. Ukraine, no. 45835/05, 31 July 2012
Shimovolos v. Russia, no. 30194/09, 21 June 2011
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nos. 15367/14 and 13 others, 21 January 2021
Şimşek and Others v. Turkey, nos. 35072/97 and 37194/97, 26 July 2005
Sindicatul “Păstorul cel Bun” v. Romania [GC], no. 2330/09, ECHR 2013
Sinkova v. Ukraine, no. 39496/11, 27 February 2018
Şolari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42878/05, 28 March 2017
Stankov and the United Macedonian Organisation Ilinden v. Bulgaria, nos. 29221/95
and 29225/95, ECHR 2001–IX
Stee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3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
Stephens v. Malta (no. 2), no. 33740/06, 21 April 2009
Svinarenko and Slyadnev v. Russia [GC], nos. 32541/08 and 43441/08, ECHR 2014
(extracts)

—T—

Taranenko v. Russia, no. 19554/05, 15 May 2014
Ter–Petrosyan v. Armenia, no. 36469/08, 25 April 2019
The Gypsy Counci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66336/01, 14 May
2002
The United Macedonian Organisation Ilinden and Ivanov v. Bulgaria, no. 44079/98, 20
October 2005
Times Newspapers Ltd v. the United Kingdom (nos. 1 and 2), nos. 3002/03 and
23676/03, ECHR 2009

—U—

Uzunget and Others v. Turkey, no. 21831/03, 13 October 2009

—V—

V. v. the United Kingdom [GC], no. 24888/94, ECHR 1999–IX
Varoğlu Atik and Others v. Turkey, no. 76061/14, 14 January 2020
Virabyan v. Armenia, no. 40094/05, 2 October 2012
Vorontsov and Others v. Ukraine, nos. 58925/14 and 4 others, 21 January 2021
Vyerentsov v. Ukraine, no. 20372/11, 11 April 2013

—Y—

Yezhov and Others v. Russia, no. 22051/05, 29 June 2021
Yılmaz and Kılıç v. Turkey, no. 68514/01, 17 July 2008
Yılmaz Yıldız and Others v. Turkey, no. 4524/06, 14 October 2014

—Z—

Zakharov and Varzhabetyan v. Russia, nos. 35880/14 et 75926/17, 13 October 2020
Zülküf Murat Kahraman v. Turkey, no. 65808/10, 16 July 2019
Ziliberberg v. Moldova, no. 61821/00, (dec.), 4 May 2004